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The Korean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Found in the
Official Records Files and Gazett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6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Republic of Korea 321-931

Tel(042)841-9697

2-리말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섭리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전지(全知)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선물하시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들춰내 보이심으로써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즐겁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복음전도관 선교현황(성결교회역사연구회, 2010)>, <성결교회 이야기(에디아, 2012)> 등을 저술하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임흥근 목사님을 통해서 필자를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국가기록원으로 인도하셨고, 수백 쪽에 달하는 유용한 자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필자가 만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1910-45년)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문서들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윌리엄 D. 커닝햄(일본 요츠야선교회), J. 마이클 쉘리, 존 T. 채이스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내국인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과 주소들이 담긴 것들이다.

이들 문서들은 한자와 일본어로만 쓰인 것들이어서 한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들은 그 가치가 높아서 일본식민지시대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조각그림들을 바르게 맞추는 일에 매우 유용하다. 모든 종교단체들의 포교관리자들은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이 펼치는 포교, 포교소설치, 포교소담임자선정, 포교소담임자변경, 포교소소재지주소,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자폐지 혹은 포교소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고(届出)했어야했다. 일제탄압의 한 상징인 이 포교규칙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꿰 맞춰볼 수 있는 많은 수의 교회사 조각 그림들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오랫동안 묵혀져있던 이들 문서들을 연구하여

자료집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엮어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독자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고자 한다. 이 자료집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귀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전주의양교회 임홍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1월 12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목차

머리말 3

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1. 성낙소 목사의 구세군에서의 활동 7
2.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
계 계출 11
3.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 14
4. 성낙소 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 활동 18
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9

I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조선선교회

1. 이인범 목사의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의 활동 31
2.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
계 및 교과명변경계 계출 32
 1) W. D. 커닝햄과 J. 마이클 셸리 사이의 분열 32
 2) W. D. 커닝햄의 채이스와 셸리와의 분열 및 사망 43
 3)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기까지 커닝햄이 겪었던 고충
47
3.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 60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1933.9-1936.6)
60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1936.7-1943.9) .. 62
4.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타 교단 출신) 68
5.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서울성서훈련원 출신) ... 77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79

II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협의회, 총회)

1. J. 마이클 셸리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 129
2.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계출 131
3. 존 T. 채이스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132

- 1) 김요한 목사 132
- 2) 최상현 목사 133
- 3) 성낙소 목사 134
- 4) 김문화 목사 135
- 5) 박관조 목사 136
- 6) 백낙중 목사 136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신고 일자
137

-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2.06.11-1936.07.08 137
-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1936.07.08-1945.08.15 137
- 3) 기독교회: 1935.0425-현재 138
- 4) 기독교의 교회: 1937.05.12.-현재 138
- 5. 특이 내용 138
-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41

**IV.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교역자회)**

- 1. 동석기 목사의 미감리교회파에서의 활동 153
- 2. 동석기 목사의 ‘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155
- 3. 동석기 목사의 ‘基督の教會’에서의 활동 156
- 4. 강문석 목사의 ‘基督の教會’에서의 활동 157
- 5. 이용주(李用周) 목사의 ‘基督の教會’에서의 활동 158
- 6. 특이 내용 159
- 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59

**V.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조선총독부관보
(1910-1945년)에 실린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 자료**

- 1. 국가기록원의 자료 171
- 2.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172
- 3.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 자료 172

VI.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

- 1. 해설 및 자료 181
- 2. 포교규칙 전문 182
-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85

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성낙소 목사의 구세군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로, 출생을 1893년(명치 26년, 실제로는 1890 경인년 생) 5월 16일로 기록하였다. 학력으로는 명치 33년(1900년) 3월부터 45년(1912년) 11월까지 한문수학, 대정 4년(1915년) 11월부터 5년(1916년) 8월까지 경성 구세군사관학교 졸업,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림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역자 주: 아현동 경성성서학원), 대정 5년(1916년) 9월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 임명, 대정 6년(1917년) 3월 중위(부위) 임명, 대정 7년(1918년) 4월 대위(정위) 임명, 대정 15년(1926년) 1월 구세군 사관직 사임, 소화 5년(1930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황빈(요코하마)교회 주임목사 임명, 소화 6년(1931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조선선교 기독교회 관리 목사 임명 파송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때였다.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로 임관되었다.

구세군은 1915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삼용리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에 사관생도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12월 28일 포교규칙 제19조에 의거 성낙소(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용리 거주)의 포교계(布教區)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090호 3, 5면(대정 5년 3월 25일)>.

구세군은 1916년 4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 서천군 서남면 옥북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이근종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194호 6면(대정 5년 7월 26일)>.

구세군은 1918년 1월 31일 삼룡리 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 구포교자 성낙소)에 신병군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28호 11면(대정 7년 5월 13일)>,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성낙소의 거주지를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58호 7면(대정 7년 6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신병군)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772호 4면(대정 7년 7월 3일)>.

구세군은 1919년 2월 2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오순준(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118의 1번지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2028호 10면(대정 8년 5월 16일)>, 동년 3월 5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김성찬),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황두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김학동)에 성낙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050호 12면(대정 8년 6월 11일)>.

그리고 1920년 7월 30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일)>. 이후 1933년 2월 28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안교철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1935호 5면(소화 8년 6월 23일)>, 1935년 8월 17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허영(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9호 5면(소화 10년 11월 11일)>.

여기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구세군이 1920년 7월 30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가라는 점이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9-12쪽)>을 보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고, 이듬해인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음의 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선포에 의하여 기미년(1919) 3월 1일에 대표자들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독립만세를 전국적으로 호창할 때에 성낙소 자신도 때가 왔다고 하면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 전주지방령(전주지방영) 구세군에서 영동지방령(영동지방영) 영국인 쏜세벨 보(소서벨 지방관의 보좌)로 영전되어 영동읍으로 이동하고 지방유지와 청년들을 망라하여 영동에서 독립만세를 전 시민들이 호창한바 일병에게와 경찰대에게 사망한 사람이 21명이요, 중상자가 수십 명이였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선동자 중의 한 사람이 성낙소 자신임을 눈치 채 일경을 피하여 즉시로 구세군 복장을 벗고 변장

하여 야간 급행열차를 타고 경성 수창동 어느 과부 집에 잠복하여 만주와 상해로 몇몇 동지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동지 중 한 사람이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고 피신책으로 향촌에서 은거하면서 성경을 수양겸 숙독하는 중에 급기야 신앙의 싹이 나고 과거 생활을 회고한 즉 선악을 양심적으로 비판하면 선과악다(善寡惡多)하여 인격적으로나 종교도덕적으로나 탐욕적인 동시에 신앙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장지성중(將止城中) 시민으로 생활한 것을 대 각성하여 성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그 전에 진정으로 인도하려던 광재근 목사가 머리에 떠올랐다. 즉시로 기차를 타고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그러나 성낙소 자신은 양심적으로 생각한 즉 신앙의 생활과 신성한 교역자의 생활을 하는 동시에는 명량한 신분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과거 구세군 교역생활의 부족과 신분상 결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성경상으로도 신앙적으로 진선진미(眞善眞美)로 알고 구세군 단체에서 다시 신앙생활로부터 최하로 시작하여 하사관을 경유하여 완전한 복직으로 정사관이 되어 신분을 회복한 후에 당당한 교역자인 것을, 상제(上帝)전에는 신앙으로 철저한 회개자복을 하여 죄를 사유함 받고, 단체적으로는 복직함으로서 신분이 보증되었다.

광재근 목사는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1922년 함경남도 북청으로 파송받기 전까지 1916-20년 사이에 부여군 금천과 홍산에서 사역하였고, 1920년 대전교회, 1921년 부강교회에서 사역하였다.<활천(정상운, ‘겸손과 온유의 목회자 광재근 목사,’ 572권 7호, 2001, 29-31쪽)> 성낙소 목사도 1915-17년 사이에 부여군 구세군교회들에서 사역하였으므로 광재근 목사가 자신을 “진정으로 인도하려던” 분이라고 기술한 것과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다는 것과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 즉 아현동에 있었던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광재근 목사의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고 기술한 성낙소 목사의 이력서와 자서전의 내용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독립만세운동사건으로 구세군에서 포교폐지를 당한 성낙소는 1920년 8월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치고 구세군에 백의중군하였다. 성낙소는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됨으로써 다시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자서전(13-14쪽)>. 따라서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지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배삐를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동경에 도착하여 커닝햄을 만났다. 이날은 커닝햄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성낙소는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教會)를 맡기로 하고 먼저 요코하마로 떠났고, 뒷날 요코하마 출항부두에 나가 커닝햄 가족을 환송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신미년) 하순경에 박흥순 목사를 대신하여 동경 요츠야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성낙소 목사가 서둘러 한국에 아주 귀국한 이유

는 한국에 남아 있는 사모의 증빙 때문이었다.

성낙소는 <자서전>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 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 하려고 한 즉, 일제정책에는 포교하려면, 조선 총독부 종교과에 포교계를 내어 등록된 후에야 하는 고로 포교계를 내는데, 교회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매우 지연된 것은 기독교의 교회라 함은 각 교파도 기독교의 교회이니, 기독교의 어떤 파라고 하라 하므로, 성낙소의 답은 우리 교회는 교파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이며, 기독교의 각 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니, 제출한대로 등록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수삼 개월을 힐난하다가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성목사의 임명장을 휴대하고 출두하라고 하므로 지참하였더니, 열람한 결과 동경 요츠야 선교회(東京四谷宣教會) 기독교의 교회 선교사 커닝함이라고 싸인한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증정(證正)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제출하였더니 즉시로 등록되어 포교를 활발히 하여 계동, 공덕동, 청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교의 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旣成)한 교회였다.

1932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계에 관한 건>(관리번호 CJA0004799, 문서번호 88-69, 286면) 및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에서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로 적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는 포교방법으로 “포교소에서 설교, 순회포교(각 지방 순회하여 전도 강연, 사경회 및

부흥회), 가정전도(가정을 방문하여 성서, 구원, 기도회 인도), 통신포교 및 노방전도”라고 기재하였고, 포교관리자의 권한으로 “총회, 연회, 지방회 의장, 목사안수례 집행, 교역자 임명 등을 관리 감독 등”이라고 적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면서 요츠야선교회가 1932년 2월 8일 발행하고 윌리엄 D. 커닝햄이 서명한, “경성 계동 127번지의 성낙소 목사를 박홍순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 사역자로 임명한다”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접수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었고, 심사와 조사를 마치고 결제가 난 날짜는 동년 8월 6일이었으며,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날짜는 8월 26일이었다.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접수 받자마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25일 일본 동경 문부성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동경시 사곡구 중정 6번지)가 정규 수속을 받아 포교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취조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 종교과에서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조회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관중 34호 소하 7년 7월 11일).

문 부 성

관중34호
1932년(소화7년) 7월 11일
문부성 종교과

조선총독부 귀중

6월 27일부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상기의 교회는 당국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일파로써 취급하는 것으로 신청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로써의 승인은 법규상 그런 수속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포교 병교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

속을 끝내고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회답함.

조선총독부는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8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관보 게재안’을 작성하였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경기도 경성부 송4동 4번지 성낙소에 의해 상기 제목의 신고서를 별지대로 제출한 결과, 동파의 본국의 본부는 내지 동경시에 소재하며, 이것의 연장으로 포교하는 취지에 대하여 만일을 위해 문부성에 조회 한 결과, 실제로 기독교회의 일파로 취급하여 포교 병교회 등에 각각 정당히 수속을 마치고 포교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수리하여 하기의 공고와 같이 결정됨.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는 1932년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3.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는 1932년 초까지 경기도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를 송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월 14일)하였고, 이 주소지에 1932년 6월 11일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와 포교관리사무소위치를 송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후에는 해방 전까지 아현정 473번지에 있었다. 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고, 포교관리자의 거주지에 포교관리사무소를 뒤야했기 때문이다.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

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 8년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친 요츠야선교회의 열매는 성낙소가 제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 이뿐 아니라, 성낙소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북 구성군 방현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같은 사실은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랐고, 이인범 목사가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보고하여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든 내용들과도 크게 달랐다. 신고 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교회들이 훨씬 많은 총 12개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신고 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는 총 3개뿐이었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또 이들 교회들의 교인수가 1933년 30명; 1934년 73명; 1935년 87명; 1936년 130명; 1937년 97명으로 조사되었다[<소화 9년 3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

부, '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272-276쪽]; [<소화 13년 9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부, '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 102-103쪽].

성낙소는 1932년 12월 10일 경기도 경성부 송4동 4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로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는 1932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24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4년 2월 2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기독교회(구포교자 김문화)에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동년 5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서 적선동

으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성낙소 목사가 1934년 2월 26일과 5월 18일에 제출한 두 건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의 책임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6월 5일 조선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인천 기독교회 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었다. 이인범은 포교관리자주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로 바꿨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하고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1935년 10월 11일 편지에서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커닝햄이 성낙소를 해임시킨 것은 성낙소가 무능했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포교관리자 자리를 탐낸 이인범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었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4. 성낙소 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김문화의 연락으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그 이유는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하기 직전에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적선정 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지만, 이름만큼은 경성교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기독교회를 하고 있었고, 채이스와 재회한 때로부터 송월정 32번지 서울성서훈련원에 출석하여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백낙중, 박판조 등과 함께 기독교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줄 교단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약 2년 정도 적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 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2)'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3)'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272-276쪽)

(4)'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치안정황> (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102-103쪽).

***아래의 사진들은 상기명의 자료들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써 총 10장입니다.

朝鮮總督府
7.8.26
官報掲載

教規別途係管

未
完
結
申
種

施行月日
昭
和
七
年
八
月
六
日
接
受
關
係
番
號
社
第
一
六
九
號
海
關
七
年
八
月
廿
貳
日

主務
學務司
社會課長
主任

總督
朱

政務總監
東京在

事務官

國信長中濟

文書課

件名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布教管理有設置局三關スル件

伺

京畿道京城府崇四洞四番地成樂伯十儿元

昭和七年八月廿參日

0121

第250號

ヨリ首題ノ届書別紙ノ通リ提出シタル處同派ノ我
 ガ國ニ於ケル本部ハ内地東京中ニ所在ニ此度其
 ノ延長トシテ布教致度ニシテ趣ニ付為念文部
 省へ照會致シタル處理ニ基督教會ノ一派トシテ
 取扱ヒ布教並教會等ニ付テ之夫々正當ノ手續ヲ了
 シ布教シツアル趣ニ付右受理ノ上左案ノ通リ公告
 相成可然故相伺フ

○官報掲載案

◎布教管理有設置届ヲ提出シタルモノ左ノ如シ

昭和七年 六月二十日	出 年 月 日	届 出 教 宗 派 名 稱	布教管理有格所位置	布教管理有氏名
六月二十日		東洋基督教會	不教道中城南宗洞同春地	成樂

文 部 省

官宗三四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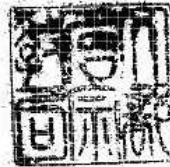
昭和七年七月十一日

朝鮮總督府

御 中

文 部 省 宗 教

六月二十七日付ヲ以テ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ニ關スル件御照會ノ處右宣教會ハ當局ニ於テハ基督教會ノ一派トシ取扱ヒ居ルモノニシテ御申越ノ如ク基督教ノ一派トシテノ承認ハ法規上其ノ手續等定ナキモ布教並教會等ニ付テハ各々其ノ手續ヲ了シ布教シツ、アルモノニ有之右同答候也



25<1> 0193

未
完
結

施行月日	昭和七年六月廿五日
番號	7.6.27
昭和七年六月廿五日起案	日接受
關係番號	
發給	
記載	
附印	
決裁	
主任	
印寫	

學務課
社會課
事務官不在
主任

件名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之開文事件

照會

朝鮮總督府

文部省宛

月 洋 總 署 下

發給

0124

今般内地ニ於ケル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
 教會ノ延長トシテ朝鮮ニ布教管理者ヲ置
 キ其ノ布教ニ從事致度旨届出タル者有之
 同人ノ申出ニ依レバ該派ノ總本部ハ米國紐
 育ニ在リ教派名ヲ單ニ *Church Missions* 號
 シ我が國ニ於テハ東京市四谷區仲町六番地ニ
 東洋本部ナルモノヲ置キ其ノ教派名ヲ東京
 四谷宣教會基督教會 *The Yamanote Church*
 ト稱シ基督教ノ一派トシテ正規ノ手續ヲ
 了シ布教シツツアル趣右ノ果シテ事實ナルヤ

(山口)

0125

取調何分、御回答相煩度尚教規、類保
せし御送附相成度、

7.6.11

7.6.11

中華民國二十六年六月十一日

布教管理者敬呈呈 佈

今據布教管理者之請求致候三付布教規則第七條
第三項。依其七記事項。其之此級及御石候也

昭和七年六月十一日

茨城府茨城郡四河町

成樂館

7.6.11
社會課

朝野總督

敬

現

茨城府

一 宗教及其教派 (一) 宗教會及基督教會

二 宗教 (別錄以下不詳出)

三 布教所 (於此處) 宗教

四 巡迴布教 (於此處) 宗教

五 家庭傳道 (於此處) 宗教

六 通信布教 (於此處) 宗教

七 路傳道 (於此處) 宗教

八 布教管理者之權限

九 布教監督之方法

十 布教管理事務所之位置

十一 布教管理者之姓名

以上

茨城府茨城郡四河町

成樂館

0127

分

履歷書

本籍 忠清南道扶餘郡世道面花樹里參西巷地

現住 京城府宗洞四巷地

姓名 張榮紹

明治三十六年五月拾六日生

學歷

明治三拾六年九月三日 同里拾五年拾壹月參漢文修業不

大正四年拾月三日 同五年八月 京城鐵道學堂學徒畢業不

大正九年八月三日 同拾壹年春月 京城法政學堂法律學不

教授於子兒任先事項

大正五年九月 敎育學士官少尉之任命不

大正六年春月 同 中尉之任命不

大正七年四月 同 大尉之任命不

大正拾年九月 同 官職辭去不

昭和五年拾壹月 東京四谷區教會基督教會福音教會主

任牧師之任命不

昭和六年拾壹月 同教會朝鮮堂教基督教會管理牧師

之任命派遣不

賞賜勳章共三章之

右之通相違無之候也

昭和七年六月

張榮紹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861
 W. D. CUMMINGS, Director
 TOKYO, JAPAN. *W.D.C.* 1882

No return is more concerning.
 This is I say that Mr. Park do bring
 of 127 items, should, is our marker in
 have missed of Mr. Henry from Park.
 W.D. Cummings, Director.

身分証明書
 京城桂田(元)
 成(来)瑞(付)分
 右者在朝鮮帝教會役者
 九二下
 近(朴)映(順)三(一)等(の)者(に)
 一九二一年二月八日
 中(東)田(谷)教(會)會(長)於(是)
 宛(理)也 今(五)六(七)日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89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Feb. 5 1932

0130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say that Mr. Pak So Chung
 of 127 Keijo, Seoul, is our worker in
 Korea instead of Mr. Hwang Soon Pak,
 W. D. Cunningham.

身分証明書
 李成桂印
 右者在朝鮮基督教會教役者
 在子リシ
 追テ朴興順(李)ニ替ヒ任事ス
 一九三二年一月八日
 東京ヨツヤ宣道會(ヨツヤ)
 書記 李成桂印

0129

I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조선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이인범 목사의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의 활동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원적을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유촌리, 생년월일을 1896년(명치 29년) 9월 25일생으로 기재하였다. 학력과 경력으로는, 1919년(대정 8년) 동양선교회 신학원 졸업, 1919-24년 12월까지 성결교회전도사 시무, 1925년 9월부터 1933년 9월까지 동경시 심천구 조선기독교회 목사 시무, 1933년 9월 조선 인천부 송현리 기독교회 목사부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내용은 이인범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고, 1920년에 졸업하였으며,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22년(혹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1924년에 동막교회로 전근되어 시무하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는 내용이었다[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역사>, 1929, 157쪽].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1920년 6월 1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이인범(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369호 4면(대정 9년 7월 3일)>, 1921년 1월 15일에는 이인범의 포교자거주지를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에서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으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6호 6면(대정 10년 6월 7일)>. 그리고 1924년 8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는 이인범의 포교자

거주지를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 12번지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교회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74호 6면(대정 13년 11월 12일)>. 이어서 동양선교회는 1925년 1월 29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성결교회에 이인범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92호 7면(대정 14년 4월 9일)>. 그리고 1926년 12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는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5면(소화 2년 5월 27일)>, 1927년 1월 27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동막성결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85번지)을 신포교담임자 박정훈(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64의 20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4면(소화 2년 5월 27일)>.

이인범 목사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즈야선교회의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 제1대 담임자로 섬겼으며,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10년 동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로 섬겼다.

2.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및 교파명변경계 제출

1) W. D. 커닝햄과 J. 마이클 쉐리 사이의 분열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문서들의 하나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11년도서류)>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34년 3월 28일 커닝햄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편지로서 성낙소가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인가와 교단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의 공문을 받고 보낸 회신이다. 커닝햄은 이 회신에서 성낙소는 작년(1933년 5월 20일)에 해임되었고, 인천 송현리의 이인범이 성낙소의 후임으로 임명받았으며, 교단명은 기독교회(Church of Christ)라고 답변하였다. 학무국에서 커닝햄에게 확인 공문을 보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만 1년쯤 지난 1935년 3월 20일경에 J. 마이클 셸리 가족이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셸리는 목회자로서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였고, 커닝햄이 모집한 한국선교사에 지원하여 파송받기 직전까지 1-2년간 동경 요츠야(사곡)선교회의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셸리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 달쯤 후인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는데,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등록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총독부가 어떤 연유로 또 한 하나의 ‘기독교회’를 등록시켜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회(남대문통)’으로 표기하였다. 셸리가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성낙소가 이미 1933년 5월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신분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인범 목사가 포교규칙을 위반하고 포교계도 없이, 포교담임자선임계도 없이, 무엇보다도 포교관리자의 법적자격도 없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성낙소가 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되었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셸리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도의 선교를 펼칠 계획이었던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셸리는 이인범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실을 미국교회들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서 커닝햄과
분열하였다.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는 이미 1934년 말부터
자신이 파면한 존 T. 채이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파
면에 항의하여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상황에서 1935-36년 사이에 또 다시 J. 마이클 쉘리로부터 공
격을 받게 되어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모금이 쉽지 않던 때였다. 커닝햄은 아마
도 이런 문제들의 수습을 위해서 1936년 4월 24일 동경을 떠
나 요코하마에서 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고, 5월
14일부터 선교여정을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
(Imperial) 카운티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거쳐 콜로
라도 주 포트콜린스(Fort Collins)에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의
사의 조언을 받아드려 선교여행을 중단하였으며, 5월 22일 미
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6월 24
일 암으로 향년 72세로 별세하였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포교에관한건(소화11년도서류)>에 J.
마이클 쉘리와 W. D. 커닝햄 사이에 있었던 분열을 가늠할 수
있는 문서들이 남아있다.

조선총독부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그리스도인 환
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로부터 1936년 5월 25일자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incinnati

조선총독부,
한국 서울.

총독 각하께,

제가 만일 귀하의 직함을 바르게 적지 못하였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귀국의 직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귀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선교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충하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사무실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사실의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귀국의 파일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신에 회람서신을 동봉합니다. 이 회람서신은 저희가 수취하고 있는 상충된 진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귀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W. D. 커닝햄이 이 서신에 동봉한 회람서신의 제1번에서 주장한대로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여 한국에서 선교사역하고 있습니까?

2. W. D. 커닝햄은 이 서신에 동봉한 회람서신의 제2번에서 진술한대로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승인과 인지 하에서 운영되는 12개의 한국인 교회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서신의 목적은 W. D. 커닝햄을 궁지에 몰려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답변에 이들 12개의 교회들이 실제로 귀하의 영예로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포함된다면, 저희들은 귀하의 정부가 그 같은 사실을 확증해준 사실로 인해서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W. D. 커닝햄의 친구들입니다. 또 커닝햄의 사역에 대해서 상충하는 진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커닝햄에 대한 저희들의 신뢰를 유지시킬만한 진실이 공적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신용 우표를 동봉합니다. 저희의 물음에 신속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보를 수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저희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 President)

별첨1: 요츠야선교회(The Yotsuya Mission, Yotsuy,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가 1935년 8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발송한 진술서 내용.

진실과 명예를 사랑하는 형제에게,

제 앞에 회람 및 개인 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있는 J. M. 셸리가 요츠야선교회의 신실한 후원자들(ropes-holders)에게 보낸 것들이고, 요츠야선교회를 중상함으로써 그들의 후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적절치 아니한 수많은 현란한 비 진리들과 명예롭지 못한 태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느낍니다. 셸리가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5월 25일 발송한 사신들과 회람서신에서 셸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자 주: 5월 25일은 셸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지 2달 후이고, 조선총독부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한지 불과 한 달 후이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사역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그 어떤 허가도 없고, 비밀리에 위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들은 어느 때라도 수치스럽게 폐쇄당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역할 정부의 허가를 갖고 있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역을 착수하기 전에 서울에 주재한 조선총독(역자 주: 총독과는 동경에서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음)을 방문하였고, 법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들었고 또 그것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1935년 7월 23일 저는 그동안 바뀐 법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총독의 동경사무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사역했다고요?” 한국인들에게 유익이 될 일본에 일찍이 세워진 첫 번째 선교회 빌딩 건축에 보태라고 일본정부가 수년 전 우리의 선교회에 일천엔(Yen) 상금을 수여했을 때, 정부는 우리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수고를 치하하는 정중한 내용을 적은 서신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밀리에 위법적으로 사역을 했다고요?”

“단지 2명의 목사들만이 고용되어 12개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국에 9명의 유급 사역자들과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15명을 해고시켰다.” 만약 신약성서의 기준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이라도 해고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절반조차도 해고당하지 않았습니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셸리는 우리의 12개의 포교소들 가운데 단지 2개소에서 일하는 사역

자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은 매우 격노하였는데, 그 이유는 켈리가 그를 요츠야선교회에서 떼어놓으려고 점잖지 못한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심지어 우리가 그에게 켈리와 함께 일하라고 권한다고 해도 자신은 거절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동양의 교훈은 서양의 교훈에 명예가 됩니다!)

“우리가 그를 동경에 묶어두려고 압박하였다.” 그 “압박”은 단지 제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켈리가 자신의 필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5년이나 10년 걸려서 터득하게 될 선교사역에 대해서 일천배가량은 더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켈리가 단신으로 새로운 필드에 뛰어들기 전에 베테랑 선교사들로부터 약간의 경험을 얻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켈리는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자 주: 커닝햄은 1934년 말에 급여삭감을 항의하는 존 T. 채이스 가족을 파면시켰고, 그로 인해서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임해버렸기 때문에 동역자가 절실한 형편이었다.)

명예의 기준과 상반된 것을 다음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긴 후원자 명단을 보내주었고, 그들에게 개인 서신들을 보내 켈리를 돕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주소록을 이용하여 그의 5월 25일자 회람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서신에서 그는 부도덕하고 심히 어리석게도 우리의 선교회를 왜곡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후원자는 그 편지를 받고 곧 바로 우리에게 500달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우리 집에 일주일간 머물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스를 음모와 일을 꾸미면서 말입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뱃삿으로 15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우리를 거스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인식하듯이 요츠야선교회 전도자들이 그와 동역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들을 고용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결한 사람이라면 다른 두 가지 이유들, 곧 저들 전도자들과 요츠야선교회를 인식할 것입니다.

켈리는 공개적이고 뻔뻔하게도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우리의 사역자들을 사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만일 그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원한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전도자들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정신훈련-모순투성이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교인이 100명 되는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40명뿐이

지만, 우리가 개방 회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개방 회원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자 주: '개방 회원제'란 침수세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을 정회원 교인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협력을 약속했지만, 오직 반대만 해왔습니다.

우리의 한국사역은 부주의하게 관리되지만, 부적절한 사람들을 걸러냄으로써 신중함이 입증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쉘리의 회람서신에 대한 많은 비평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시간과 우편요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 속에서 이 편지에 서명합니다.

회장 W. D. 커닝햄(W. D. Cunningham, director)
에밀리 B. 커닝햄(Emily B. Cunningham)
에딧 쉘멜(Edith Shimmel)
에텔 존스(Ethel Jones)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1936년 7월 17일 기안하여 25일 결재한 문서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가 5월 25일 조선총독부에 서신을 보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포교활동에 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답변의 내용은 성낙소가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고, 1936년 1월 10일부터는 이인범이 포교관리자이며, 현재(1936년 7월)까지 등록된 포교소는 총 3개로써 전 포교관리자 성낙소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에 발송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장님께,

귀하의 지난 5월 25일자 편지 곧 동경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에서 펼치고 있는 선교사역에 관해서 요청하신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동경 요츠야선교회는 이곳 선교사역의 포교관리자로 성낙소(Seirakusho, Song Nak So)를 임명하여 1932년 6월 11일 사역개시 신청서(포교관리자신청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세 개의 교회들이 정부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성낙소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 직책에서 물러났고, 같은 날 이인범(Riinhan, Yi In Pom)이 성낙소의 후임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상기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사곡선교회 아현기독교회, 경성부 아현정 57번지(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동경사곡선교회 경성기독교회, 경성부 적선정 190번지(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동경사곡선교회 인천기독교회, 인천부 송현리 89번지(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89 Shokenri, Jinsen)

신실함으로,

학무국 국장(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올림

환원협의회(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는 1936년 9월 24일자 J. 마이클 쉘리의 편지를 받고 10월 6일 다시 조선총독부로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국장님께,

부디 동봉한 글들을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영예로운 정부가 깊이 배려해 주셔서 제게 귀하의 직원이 조사한 사실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조사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귀하께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 President)

별첨1: J. 마이클 쉘리(Route 3, Eugene, Ore)가 1936년 9월 24일 리온 L. 마이어즈에게 보낸 편지.

친애하는 마이어즈 형제님께,

<환원전령> 9월호 12쪽 서신을 읽고 형제님께 몇 줄 적어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호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신뢰 속에서 형제님이 받아보시게 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비판하려기보다는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쪽 서신 마무리 부분에서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추가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스스로 설명합니다. 또 우리는 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바라는 분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어즈 형제님, 저는 이 편지가 진정 스스로 설명하는지, 심지어 형제님에게조차, 궁금합니다.

도미나가(Tominaga) 씨의 편지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현재 세 개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또 그는 그 세 개의 교회들의 주소들을 제시합니다. 한 곳은 진센(Jinsen)으로써 일본어로 제물포를 뜻합니다. 다른 두 곳은 게이조(Keijo)로써 일본어로 서울을 뜻합니다. 형제님은 이들 교회들이 제가 동봉해 드린 선서진술서(공증서) 복사본에서 다구치(H. Takeuchi)가 언급한 세 개의 교회들인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주소는 채전이고, 두 번째는 묘지이며, 세 번째는 진센(인천)의 상업중심지에 있는 번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주소지들에는 교회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형제님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도미나가 씨가 한국어로 하지 않고, 일본어 음역으로 적고 있지만, 그들 번지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부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이 한국에 교회들이 12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님은 성낙소가, 비록 몇 년간 요츠야선교회에 고용되지 못했지만, 1936년 1월 10일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 직책을 유지한 것을 주목하십니까?

형제님은 1932년 이전까지는, 이 편지에 따르면, 비록 그들이 1923?년에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역자 주: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지방대지진으로 인해서 한국선교가 1924년으로 지연됨)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에 대한 그 어떤 허가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제님은 이인범(Yi In Pom)이 I. P. Lee와 동일 인물인 것과 수년 전 성낙소가 해임된 이후로 줄곧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인

것을 아십니까? 형제님은, 비록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 관리자변경계가 1936년 1월 10일에 승인되었지만, 도미나가의 회신 날짜인 1936년 7월 29일까지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에 실린 열두 개의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곳도 조선총독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형제님은 이 사실이 요즈야선교회가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그들이 허가를 받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말입니다.

저로서는 한국에서 받아본 별도의 정보 때문에 상기한바와 같이 도미나가 씨의 회신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형제님도 아마 이것들을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만, 이 회신을 읽는 보통의 독자는 요즈야선교회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고, 받고 있었다는 정보와 세 개의 교회들이 그 허가에 의해서 보고되었다는 정보만을 입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비판도 부당했다는 판단을 할까 걱정됩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 가해진 한국의 선교 상황에 관한 진실이 유포되는 것을 가로막는 엄청난 압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커닝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제님과 수확할 일군을 기다리는 한국에 진실로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현재 채이스(Chase) 형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의 길에는 그 어떤 방해요소도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현장에 상주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형제님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중대한 시기에 채이스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형제님이라면 무엇인가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 요즈야선교회의 실행위원회가 그 사실에 직면한다면, 그들은 채이스 형제가 현재 펼치고 있는 모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이 그의 감독 아래에서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형제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형제님을 크게 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J. Michael Shelly

별첨2: 법정변호사 다케치의 공증서. 이 공증서는 1935년 10월 5일 쉐리 가족이 10월 28일 한국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작성되었다. 쉐리가 치밀하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정변호사 다케치(H. Takechi, 서울, 1935년 10월 5일)

이 글(공증서)은 조선에서의 요츠야선교회에 관한 다음의 진술들을 서울 총독부사무실에 보관된 기록들과 조선에서 이뤄지는 선교들을 관장하는 행정법(포교규칙)들과 더불어 점검한 것과 그것들이 세세한 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1. 총독부(학무과 사회과)의 허가없이 조선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들을 조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2.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상주해야한다.

3. 교회를 개척하는 자는 그 사실을 총독부에 보고해야 하고, 포교관리자가 승인해야 한다.

4. 설교자의 자격들, 이름, 교회주소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 목사들의 이동사항과 교회주소의 변경 등도 10일 이내에 총독부(학무과 사회과)에 보고해야한다.

5.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아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경찰은 강제로 교회를 폐쇄할 권한을 갖는다.

6. 성낙소가 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있는 동안, 총독부는 조선영토에서의 선교에 대해 또 다른 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7. 포교관리자는 모든 보고서에 날인하여야한다.

8. 성낙소(주소: 서울 송4동 4번지)는 1932년 6월 17일(역자 주: 실제로는 11일) 일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Yotsuya Mission, Church of Christ, Tokyo, Japan)의 포교관리자로 포교관리자계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는 조선선교를 위해 발행된 유일한 허가서를 지니고 있다.

9. 요츠야선교회의 허가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교회들이 성낙소에 의해서 포교소설치계가 보고되었다.

1) 1932년 12월 4일, 서울 용강면 아현리 57번지

2) 1932년 12월 7일, 서울 적선동 190번지

3) 1933년 2월 1일, 인천 송현리 89번지

10. 상기한 주소에 어떤 교회도 없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포교소소재지변경제도 없다. 본인이 직접 오늘 이들 세

곳의 장소들을 방문하였으나 아무 곳에서도 교회를 찾지 못하였다.

11.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쪽 두 번째 란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을 읽었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18개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룹들(주일학교)과 12개의 교회들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 12개의 교회들은 불법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그중에 어느 곳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기한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날인과 도장을 찍어 증명함.

법정변호사 히로카타 다께치(Hirokata Takechi, Barrister at Law)
(인)

미국에서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보고들을 보면, 존 T. 채이스와 세 명의 미혼 여성들의 사역을 크게 훼손시켜온 W. D. 커닝햄이 이제는 우리들의 명성뿐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역까지도 훼손시키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본국의 형제들이, 만일 그분들이 사실에 접근한다면, 이 점을 목과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사실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저희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으신 때로부터는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헌금과 연락은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에 계시는 클레어 허치슨(Claire Hutchison)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2) W. D. 커닝햄의 채이스와 셸리와와의 분열 및 사망

채이스와 커닝햄과의 관계에 금이 간 원인은 경제대공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후원금 감소로 급여가 삭감되고 사역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닝햄이 빚지는 것을 몹시 꺼려하였고, 게다가 한국사역의 규모는 날로 늘어만 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은 1934년 8월에 불만을 토로하는 존 T. 채이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였고, 10월에 해임시켰으며, 결국 채이스 가족은 1934년 11월 2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채이스와 커닝햄 사이에 논쟁이 지속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하였고, 선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으로 섬겼던 J. 마이클 쉘리 가족은 커닝햄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3월 20일경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쉘리 가족은 수일 후인 3월 24일 주일날에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는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요츠야선교회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이 때 김영배 전도자가 쉘리의 통역을 도왔다.

J. 마이클 쉘리는 서울도착 만 2달만인 5월 25일 미국에 편지를 보내 요츠야선교회가 한국에서 펼치는 선교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쉘리가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주소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를 제출한 것은 한국 도착 한 달 만이고, 그로부터 또 다른 한 달 만에 요츠야선교회가 한국에서 펼치는 선교의 문제점들을 커닝햄과 미국에 알림으로써 쉘리와 커닝햄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쉘리 가족은 비교과 신약성서기독교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그들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J. 마이클 쉘리와 가족은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1936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커닝햄의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서 커닝햄 부부는 1936년 3월에 호주에서 커닝햄의 SOS요청을 받아 동경 요츠야선교회 경력선교사로 부임한 히치와 함께 급히 한국의 선교지들을 방문하였고,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4월 24일 동경을 떠나 요코하마 항에서 배로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을 하던 중인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커닝햄 부부의 이 선교여행의 목적은 아마도 채이스와 쉘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커닝햄이 동료인 채이스와 쉘리 등과 갈등을 일으킨 것은 커

닝햄이 이인범 목사를 지나치게 신뢰한 때문이었다. 이들 선교사들과의 분열이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았고, 1936년 1월 10일 그 결실을 보았다. 커닝햄 사후 요츠야선교회는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가족을 1938년 2월 18일 이후 서울에 상주시켰고, 등록교회가 3개뿐이던 것에서 히치 가족이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는 한국에 등록된 교회가 11개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히치 가족도 서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듬해인 1939년 8월에 호주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원균 목사가 목회했고, 또 요츠야선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던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소재의 기독교회는 그 흔적을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도 이 시기(1933-36년)가 포교관리자로 파송된 이인범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해임 당하였지만, 법적으로는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성낙소도 이인범도 방현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는 흔적은 찾지 못하였고, 조선총독부관보에 방현기독교회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김성산 목사(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만 남아 있다.

J. 마이클 쉘리가 리온 L. 마이어즈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쉘리가 범한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1)조선총독부가 회신한 세 개의 교회들의 주소는 성낙소 목사가 1932-33년 사이에 올린 포교소설치계에 따른 것이며, 자체 건물이 없이 임대장소 또는 주택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수시로 집회소를 옮겨 다녔고, 쉘리는 변호사의 공증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직원은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포교소설치계에 의거하여 회신하였고, 이인범은 33-35년 사이에 1936년 1

월 10일까지 합법적인 포교관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포교계, 포교소설치계, 포교소소재지변경계 등을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란 점을 아마 고의로 간과하였을 것이다.

(2)셸리나 커닝햄이 후원자들을 속이거나 기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셸리는 입국직후인 1935년 3월 24일 인천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고, 기념촬영까지 한 사실이 있다. 이때는 이미 성낙소가 보고한 송현기독교회의 주소지가 바뀐 뒤였다. 만일 셸리가 새로운 번지에 건축까지 마친 송현기독교회의 존재를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성낙소가 보고한 주소지에 대해서 고의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는 자신이 친히 방문한 송현기독교회를 성낙소가 보고한 교회와 동일하게 보지 않았거나 자신이 방문한 송현기독교회를 불법적인 교회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도 아니면 기만한 것이 된다.

성낙소는 세 개의 교회들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후 1933년 5월에 해임되었으므로 이 공증서가 작성된 1935년 10월 5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후임자인 이인범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공증서를 쓴 변호사 다케치도, 공증서를 요청한 셸리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셸리는, 심지어 채이스까지도, 이들 교회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셸리는 1935년 3월 24일 주일에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한 후에 단체사진까지 촬영하였고, 요츠야선교회의 일본주재 선교사로서 채이스는 1931년에 한국의 교회들을 시찰하였으며, 1936년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한 후에도 이들 교회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채이스의 경우 이들 교회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셸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셸리나 채이스의 부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은 주소만 바뀔 뿐이지,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월간지, <환원 전령>(Restoration Herald)의 편집인 리온 마이어즈(Leon Myers)가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는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사역이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1932년 6월 11일 이후로 중단 없이 기독교 사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3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기사가 <환원 전령>지에 실렸다고 소개하였다. 이 정부 확인 교회숫자가 이듬해에 히치(T. G. Hitch) 가족이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에서는 11개로 재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인범 목사가 1936-37년 사이에 7개 교회를 추가로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이었다.

3)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기까지 커닝햄이 겪었던 고충

이인범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6월 5일에 조선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9월에 입국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기까지 합법적으로 포교관리자 행세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1933년 5월 20일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 1월 10일까지 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낙소는 이인범으로부터 포교폐지를 당한 것은 1936년 9월이었다.

커닝햄은 1935년 쉘리 선교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해야한다는 사전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 5월 20일 성낙소 목사를 해임한 후 1935년 전반기까지 만 2년간 포교관리자를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변경하려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데도 파악할 수 없다. 아무튼 커닝햄은 쉘리가 심각하게 문

제를 제기하고 나온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포교관리자 변경계를 제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의 꺾끄러운 변경조건들에 직면하였고, 가까운 이웃이었던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수차례 쓰는 등의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에 가서야 비로소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었다.

1935년 8월 28일 도요히코 와타나베(Toyohiko Watanabe)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커닝햄은 해군제독 사이토 자작의 소개장을 동봉하였다.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는 조선총독부에 종교계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2회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냈으며, 사이토 부부는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허가한 인물이었다. 커닝햄은 이 편지에서 수년 전 성낙소를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후임자인 이인범을 포교관리자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커닝햄은 8월 28일자 편지에 답신을 받지 못하자, 1935년 9월 19일 도요히코 와타나베(Toyohiko Watanabe)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커닝햄은 이 편지에서 조선 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로 성낙소 대신에 이인범을 등록시켜달라며 사이토 전 총독의 소개장을 동봉하였는데, 답신을 받지 못하였으니, 포교관리자변경계의 건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1935년 9월 25일 기안하고 27일 결재를 받은 후 28일 학무국장명의로 공문서(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의 건)를 W. D. 커닝햄에게 발송하였다. 이 공문을 받고 크게 실망한 커닝햄은 1935년 10월 11일 전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어제 만나 뵈도록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각하게 와타나베 씨가 보낸 공문을 건네 드리면서 제가 꼭 설명했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켈리 씨는 요츠야선교회와 그 어떤 관계도 결코 가졌던 적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켈리 씨는 배후에 그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독립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지” 않았습니 다.

저 혼자에게만 사역자들과 25개의 교회들의 사역과 64개의 일요 학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켈리 씨는 교회들도 없고, 일요 학교들도 없으며,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도 없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저와 켈리 씨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여 누가 포교관리자가 될지를 결정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또 그 문제를 타협해서 누가 저의 집에서 살지를 결정하라고 제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이인범을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하려면 성낙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성낙소를 무능하기 때문에 해고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켈리 씨와 마찬가지로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그는 이인범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성낙소 씨를 임명하였는데, 제게 그를 해고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와타나베 씨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분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각 하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35년 11월 16일 커닝햄은 사이트 자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또 썼다.

와타나베(Watanabe) 씨가 이인범을 조선 포교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켈리 씨는 우리가 임명한 한국 포교관리자도 아니고, 결코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이고, 우리가 불성실함 때문에 해고한 성낙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리 씨와 그의 가족은 10월 28일 배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 취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회신을 위한 우표를 동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닝햄은 1935년 12월 10일에 학무국이 발송한 1935년 12월 5일자 공문을 받았는데, 성낙소에게 보낸 해임명령서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내용이였다. 이에 커닝햄은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어제 저는 성낙소 씨를 해임한다고 통보한 나의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12월 5일자 귀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제게는 그 편지의 복사본이 없습니다.

저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고 성씨의 후임자로 이인범이 임명되었으니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해군제독 사이토 자작님을 뵈었습니다. 사이토 자작님은 제게 한국에서의 사역을 최초로 허가하신 분이십니다. 사이토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성씨를 해임한 편지의 복사본이 없다는 것을 귀하께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12월 11일자 자신의 편지가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1935년 12월 24일 학무국장에게 등기로 편지를 보냈다. 커닝햄은 등기편지에서 12월 11일자 자신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학무국장의 친절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후 12월 11일자 편지내용을 설명하였고, 복사본을 동봉하였다. 그러면서 “성낙소는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되도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936년도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 적었다.

커닝햄은 1936년에 가서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접수받겠다는 공문을 학무국으로부터 받고나서 1936년 1월 21일에도 총독부에 감사편지를 썼고, 이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자 2월 11일에 다시 편지를 보냈다. 학무국에서 2월 21일 기안하여 2월 27일 발송한 공문을 받고 학무국에서 요청한 내용을 이인범에게 편지를 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인천에 거주하는 이인범이 조선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되었는지를 물었다. 커닝햄 부부는 1936년 3월 중에 한국교회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방문을 끝내고 동경에 돌아온 후에 보낸 편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1936년 3월 24일자에 기안하여 26일자에 결재를 마치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3월 18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공문을 커닝햄에게 발송하였다. 커닝햄 부부는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 중이던 그해 6월 24일 별세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처리해주려는 뜻이 있었는지, 시내 송4동 4번지 주소로 성낙소에게 1935년 12월 24일자 소인, 23일 결재된 통지서를 보내 12월 26일 정오에 인장 지참하여 사회과 종교계에 출두하라고 통보하였다. 통지서가 반송되었던지, 이번에는 1936년 1월 7일자 소인이 찍힌 통지서를 경성부 옥천동 11번지로 성낙소에게 보냈다. 요지는 포교관리자의 건으로 면담을 요청하니, 1월 10일 정오에 인장 지참하여 사회과 종교계에 출두하라는 것이었다. 추정컨대 이 날 성낙소와 이인범 두 목사가 모두 학무국 사회과에 출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사직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성낙소 목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구하였다. 다만 훗날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에서 이인범이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한 것에 <조선총독부관보 제 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대해서 그의 사육 때문이었다고 불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1월 10일에 작성된 포교관리자변경계, 포교관리자 및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를 접수받았다. 서류는 이 날짜에 맞춰 작성된 커닝햄의 사령서, 곧 이인범을 성낙

소 대신 포교관리자로 임명한다는 편지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커닝햄 선교사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규칙 제6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조회를 거쳐 승인이 떨어져 그 사실이 3월 18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W. D. 커닝햄이 1935년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들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5년 3월 20일경에 서울에 입경한 J. 마이클 쉐리는 24일 주일날에 송현기독교교회(담임목사 이인범)를 김영배의 통역도움을 받아 방문하였다. 이때 송현기독교교회는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전기시설을 갖춘 예배당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인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와 포교소설치계를 동시에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이때 성낙소는 담임목사를 성낙소로, 소재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송현기독교교회는 1936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기<조선총독부관보 제 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전까지는 이인범이 포교담임자변경계와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포교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둘째,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보낸 편

지에서 1935년 10월 11일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한 달 후인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낙소가 무능했다거나 불성실했다는 말은 믿기지 않는 말이다. 성낙소 목사는 포교관리자를 맡았던 20개월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던 서울 제1교회를 송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월 14일)하였고, 조선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등록(1932년 6월 11일 승인)시킴으로써 비로소 포교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트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사무소 위치를 송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또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옮겼다.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잦았던 것이다. 성낙소는 김문화 목사를 포섭하여 1932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포교규칙에 따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이뿐 아니라, 성낙소 목사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성낙소는 경기도 경성부의 경성교회와 아현교회 뿐 아니라, 인천부의 송현기독교교회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함으로써 포교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을 펼쳤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북 구성군 방현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엄격히 말하면, 1933년 5월까지의 이들 세 개의 교회뿐이었으므로 커닝햄이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친 선교의 열매는 이 세 개가 전부였고, 성낙소 목사가 커닝햄에게 고용된 20개월 기간에 얻은 결실이었다. 반면에 이인범은 그의 화려한 선교보고에도 불구하고, 신고 된 인천 송현기독교교회와 신고 되지 아니한 방현기독교교회를 제외하고는 자체 건물을 가졌거나 제대로 된 교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낙소가 불성실했거나 무능했다는 말은 성낙소 목사를 두 번 죽이는 행위였다.

셋째, 커닝햄은 성낙소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 성낙소를 동경에 초청한 것이 커닝햄이었지만, 성낙소가 일본에 건너간 직후 커닝햄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커닝햄이 동경에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성낙소는 사모의 병환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낙소는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기독교회’(基督之教會)를 개척하였는데, 이 교회출신 재일유학생에 의해 커닝햄에게 소개되었다. 성낙소는 커닝햄의 초빙을 받아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갔고, 횡빈조선기독교교회를 1931년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그리고 성낙소는 1931년 9월 하순에 요즈야선교회 조선 포교관리자로 안수를 받고 귀국하여 장로교출신 박홍순 목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커닝햄은 성낙소가 일본에 머문 대부분의 시간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성낙소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커닝햄은 1927년 8-9월경부터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선교기지들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된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인범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였다. <도쿄 그리스도

인> 1932년 8월호와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커닝햄은 이인범을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한국에 단기선교를 보냈는데, 이 기간에 이인범이 거둔 놀라운 성과에 고무된 요츠야선교회는 심천조선기독교회의 담임자 이인범을 새로운 포교관리자로 한국에 파송할 목적으로 성낙소를 해임하였다. 정확한 해임날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커닝햄은 1935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에 보낸 편지에서 해임날짜가 1933년 5월 20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요츠야선교회는 1933년 6월 5일 월례회에서 이인범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조선 포교관리자)로 파송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인범은 섬기던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조력자였던 채호(Ho Cheh)에게 맡기고 동년 9월에 한국으로 건너갔다.

넷째, 이인범이 성낙소의 포교관리자 직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닝햄도 원했고, 이인범도 원했고, 송현기독교회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인범은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러던 참에 커닝햄이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이인범을 한국에 단기선교사로 보냈고, 이 기간에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서울 창동교회가 부흥강사 자질이 많은 이인범 목사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이인범은 성낙소를 창동교회에 심으려함으로써 인천부 송현기독교회를 염두에 뒀으며, 한국교회들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커닝햄에게 보냈다. 크게 신임했던 이인범의 선교보고에 고무된 커닝햄은 5월 20일 성낙소를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이인범을 6월 5일 선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낙소 목사가 해임당한 것은 커닝햄이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성실”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성낙소가 포교계와 포교소로 등록시킨 송현기독교회

에서 부흥회를 개최한 이인범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던 송현기독교교회에 부임하기를 원했던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성낙소 목사는, 비록 커닝햄으로부터 해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합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인범이 자신의 포교계와 포교자선임계 및 포교소소재지변경제도 없이 불법적으로 송현기독교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여 활동한 것과 송현기독교교회가 주소지를 옮겨 건축한 것 등을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범의 선교활동을 훼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현기독교교회는 성낙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등록시킨 교회였다. 대신에 이인범은 커닝햄이 파송한 조선 포교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낙소가 시무한 적선동 경성교회나 김문화가 시무한 아현동 교회에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다. 1936년 1월 10일 그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후인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할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렇다고 이때까지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가 동일 장소에서 목회를 지속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일본인 변호사 다케치가 1935년 10월 5일에 그들의 교회주소지를 찾아갔지만, 동일번지에 교회들이 없었고, 송현기독교교회가 건물을 짓고 이전하여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낙소가 제출한 최초의 포교소소재지 89번지를 찾아간 후에 동일 장소에 교회가 없다는 공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 역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여섯째, 이인범에 의해서 포교계가 폐지된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는 자신들의 포교계를 총독부에 제출해줄 교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을 두었을 수 있고, 1938년 3월 31일 조선야소교회는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

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5면(소화 15년 7월 8일)>. 그러나 성낙소 목사는 다행히도 1937년 4월에 김문화 목사의 전갈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고, 채이스가 갖 시작한 서울성서훈련원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와 <그리스도인 표준> 1939년 3월 18일자 및 6월 17일자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되었다. 실제로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10면(소화 14년 6월 23일)>. 그러므로 성낙소 목사가 조선야소교회에 잠시 적을 두게 된 이유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곱째, W. D. 커닝햄이 1935년 10월 11일 전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셸리 씨는 요츠야선교회와 그 어떤 관계도 결코 가졌던 적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셸리 씨는 배후에 그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독립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에게만 사역자들과 25개의 교회들의 사역과 64개의 일요학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셸리 씨는 교회들도 없고, 일요학교들도 없으며,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도 없습니다.”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보였다. J. 마이클 셸리 선교사는 요츠야선교회

의 정기후원자였고, 실행위원회 위원까지 지낸 목회자였기 때문이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며, 1935년 3월 20일경에 입경하여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 이때 쉘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가 성낙소로 남아있는 것과 이인범이 포교계 제출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커닝햄에게 통보하였으나 오해만 받아 미국 교회들에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커닝햄은 적극적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내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커닝햄이 적대자라고 말했던 쉘리의 방해와 성낙소의 비협조가 한몫을 하였다.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 제출이 1933년 9월에 부임한지 2년 3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전 조선총독 사이트의 도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36년 1월 10일에 해결된 이유였다. 쉘리는 1935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수일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불법성을 파헤칠만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덟째, 이인범이 포교계 제출도 없이 포교활동을 한 것은 불법이었다. 성낙소가 신고한 3개 교회이후 해임당한 후 1936년 1월 10일까지 이인범이 활동하여 세운 교회들은 모두 무신고 불법교회들이었다. 쉘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이인범이 포교규칙을 몰랐거나 성낙소가 반대하여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커닝햄이 1934년 3월 28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보낸 편지내용으로 볼 때, 이인범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성낙소의 반대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그 같은 사실에 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학무국에서 커닝햄에게 성낙소가 포교관리자인가를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커닝햄과 이인범이 포교관리자변경계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부터였다.

아홉째, 이인범이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커닝햄의 노력과 전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인범은 이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구 포교관리자 성낙소(경성부 수창동 106번지)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17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와 포교관리자사무소를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1면(소화 11년 3월 18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번지의 이인범(명치 29년 9월 25일생)을 본 선교회 조선지방 포교관리자로 전임자 성낙소를 대신하여 임명함”이라고 쓴 사령서와 성낙소 목사가 도장을 찍은 포교관리자사직계가 첨부되었다. 이인범이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는, 1936년(소화 11년) 3월 26일자 결재 서류에 따르면, 소화 11년 3월 24일 학무국 사회과에서 기안하여 25일 학무국장과 사회과장 및 주임의 결재가 떨어졌다. 3월 10일까지 조회마치고 18일 관보에 게재토록 하였다.

열째, W. D. 커닝햄은 조선 포교관리자가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변경되도록 하려고 1935년 후반기를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고, 해군제독, 조선총독부 총독 2회, 일본수상을 역임한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거의 떼쓰는 수준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35년이 커닝햄에게 매우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불운한 해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파면시켰던 존 T. 채이스가 본토에서 펼친 공격도 부족해서 다년간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했고, 실행위원까지 역임했으며 자신이 모집하여 한국선교사로 보낸 J. 마이클 웰리의 공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츠야선교회에서 사역하였던 3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채이스의 파면에 항의하여 요츠야선교회를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아

무런 이유 없이 포교관리자직책에서 성낙소를 해임하고 이인범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성낙소뿐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조차 그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사단의 발생은 부분적으로 커닝햄이 이인범을 지나치게 신뢰한데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수습을 위해서 커닝햄 부부는 호주에서 급히 초빙한 경력선교사 히치와 함께 1936년 3월에 한국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 중이던 그해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3.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1933.9-1936.6)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커닝햄 선교사는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이 허가하였으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커닝햄은 일본에 상주하는 선교사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츠야선교회가 파견한 한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만 8년간이나 포교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요코하마)에서 돌아와 포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의 8년의 결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

용들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신고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즈야선교회의 한국기독교회에는 총 3개의 교회만이 존재하였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참고로 이 무렵 천주공교 327개, 조선야소교장로회 2583개, 기독교조선감리회 814개, 성공회 87개, 로국정교회 6개, 일본기독교회 12개, 일본메소제스트교회 7개, 제7일안식일야소재림교 129개, 동양선교회 149개, 구세군 74개, 조선기독교회 27개, 동양선교회호리네스교회 7개, 조사회중기독교회 26개, 기독교동신회 2개였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9월에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하여 성낙소를 대신하여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그의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인범 역시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1935년 5월에 J. 마이클 쉘리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으며, 그것도 커닝햄과 전 조선총독 사이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인범 목사는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포교규칙 제6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리사무소소재지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동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후 이인범은 7년 8개월간(지지자였던 커닝햄 사후 7년 3개월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

경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소화 18년 10월 26일)>, 13일이 지난 30일에는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을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소화 18년 11월 8일)>. 이들 자료들로 비춰볼 때 이인범은 1943년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는 장로교회로 이적하였고,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51년에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1936.7-1943.9)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후 동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와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와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소화 11년 10월 16일)>. 또한 이인범은 같은 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

회 아현기독교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도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같은 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57번지를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4,6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 아현정 473번지의 교회가 서울제1교회(경성교회)의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이곳에 1938년 서울성서훈련원을 개교시켰다가 가까운 곳의 건물 2층을 세내어 이전하였다.

1936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송현기독교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그리고 5일 후인 1936년 12월 2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를 신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6면(소화 12년 2월 9일)>. 이로써 이인범 목사는 1936년 말까지 성낙소 목사의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성낙소의 흔적지우기를 완료하였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

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는 유정기독교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따라서 커닝햄이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이던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그리스도인>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 된 교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7개 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한 곳(아현정기독교교회)만 남았고,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 제2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5월호)> 1936년 말까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인 아현정기독교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경성교회로서 계동에서 시작되어 송4동, 수창동, 적선동으로 옮겨 다녔고, 아현정 473번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잡았다. 평북에서는 근담동과 대류리에 세워진 포교소들의 소식이 끊어진 대신에 구성군에서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정주군에서 약수포기독교교회와 문인동기독교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약수포기독교교회가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된바가 없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오봉기독교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포교

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10면(소화 12년 6월 2일)>. 또 동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면(소화 12년 6월 2일)>. 이를 후인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과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와 문인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정삼선(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를 뒤인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그리고 동년 10월 3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 및 포교소명칭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소화 12년 12월 16일)>.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소화 12년 4월 10일)>, 동년동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25일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와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이인범은 1939년 1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제10조에 의거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소화 14년 3월 16일)>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소화 15년 8월 27일)>. 또 동년 3월 1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에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소화 15년 3월 30일)>. 또 이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67호 6면(소화 15년 4월 13일)>. 수일 후인 3월 1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소화 15년 7월 2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에

송기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4058호 15면(소화 15년 7월 31일)>. 그리고 1940년 8월 19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홍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홍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7호 3면(소화 15년 9월 3일)>.

이인범은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회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9조에 의거 현천기독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20호 2면(소화 17년 2월 23일)>.

그리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 5020호 14면(소화 18년 10월 26일)>. 그리고 신포교관리자인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이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 목사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4년 9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9번지)의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3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구포교담임자 이난기를 신포교담임자 유지옥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3호 2면(소화 19년 12월 7일)> 및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에 유지옥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5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소화 19년 12월 9일)>.

4.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타 교단 출신)

1) 박제곤(동경 유학생)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제1교회를 출석하던 중 한국에 서울 포교소(선교기지)를 물색해달라는 커닝햄의 부탁을 받고 커닝햄 부부의 입경보다 일주일 빠른 1924년 3월 18일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7월호에 따르면, 요츠야선교회는 1924년 5월에 박제곤을 한국에 보내 선교기지를 개척토록 하였으나 부친이 박제곤의 복음사역을 반대함으로써 사역을 포기하였다.

2) 이원균 목사

이원균은 박제곤 대신 요츠야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서울포교소에 부임하여 1924년 10월부터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하기 위해서 사임한 1927년 초까지 사역하였다.

이원균은 1927년 기간에 동양선교회 김천성결교회(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남산정 34의 8번지)에서 목회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27년 11월 3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구포교담임자 이원균을 이정순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8호 9면(소화 3년 1월 12일)>. 그리고 1928년 5월 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 이원균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5호 4면(소화 3년 7월 5일)>.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2월호에 이원균이 신학을 마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가 경제적인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927년 말에 김천성결교회를 사임한 것으로 보아 1928년에 경성성서학원에 복학(또는 입

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균은 1933년경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파송되어 1937년 중반에 자녀교육문제로 사임하고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에 부임하였다.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성낙소 목사도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한 이인범 목사도 이원균의 포교계나 포교소담임자선정계 등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하지 않았다.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과 정주군에서 펼친 왕성한 목회활동이 불법적이었던 셈인데, 그렇다고 무슨 법적 제재나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커닝햄으로서는 그가 이런 업적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였다.

3) 김광춘 목사

이원균을 대신하여 1927년 중반부터 29년 3월까지 서울 포교소를 맡아 사역하였다.

4) 박홍순 목사

한국장로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제5교회를 출석하던 동생 박경순이 개척한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를 맡아 1927년부터 1929년 초까지 섬겼다. 박경순이 미국에 유학을 떠나면서 형인 박홍순을 요츠야선교회에 추천하였다. <도교 그리스도인> 1929년 11월호에 따르면, 박홍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김광춘의 뒤를 이어 서울포교소에서 사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0년 4월 27일 서울포교소를 요츠야선교회 서울 제1교회로 승격시켰다. 이 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부임한 1931년에 계동에 있었다.

5) 이성록

1930년 4월부터 서울에 투입되어 31년 무렵까지 박홍순 목사와 함께 선교기지들에서 사역하였다.

6) 이동혁

1930년 4월부터 서울에 투입되어 31년 무렵까지 박흥순 목사와 함께 선교기지들에서 사역하였다.

7)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1931년 9월에 귀국하여 박흥순 목사의 뒤를 이어받았다.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서 1933년 5월 20일 해임될 때까지 20개월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서울 제1교회를 계동에서 송4동의 이층 목조건물로 옮겼다. 이곳에 1932년 3월 14일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하였고,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부터 조선선교를 시작하였지만, 1932년 6월 11일까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생각해 내거나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만 8년간의 이들 초기사역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그간의 사역은, 비록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승낙이 있었을지라도, 모두 불법이었던 셈이다.

성낙소 목사는 이 기간에 3개 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에 해임된 이후로도 1936년 1월 10일까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였기 때문에 요츠야선교회가 새로 선임하여 파송한 이인범 목사는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한 1933년 9월부터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1936년 1월 10일까지 조선총독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포교관리자 직책을 수행한 셈이었다.

이인범 목사는 1936년 9월 4일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성낙소 목사(내수정기독교회)는 1937년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8) 김문화 목사

장로교회 출신의 김문화 목사는 김동렬 목사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다. 성낙소 목사는 1932년 12월 2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 관보 제1829호 7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 목사의 포교담당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이인범 목사는 1936년 9월 4일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김문화 목사는 1937년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9) 이인범 목사

이인범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6월 5일 조선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9월에 입국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그가 원하는 대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될 수 있었다. 이후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여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신분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이후에는 요츠야선교회가 후원을 끊고 한국선교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10) 김영배 목사

김영배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성낙소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5월호에서였다. 1935년 3월 24일에는 이인범이 시무한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일예배 때 J. 마이클 쉘리 가족의 통역을 맡았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12월호에 따르면, 김영배는 동경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1938년 사역자들의 소개에서는 김영배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선교사 웰리는 김영배가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였고, <도쿄 그리스도인>은 그가 월 100엔의 급여를 받는 교사직을 포기하고 요츠야선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배는 자신이 개척한 유동기독교회에 1936년 6월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였고, 이인범은 9월 4일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소화 11년 10월 1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10월 3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바꾸는 포교소소재지변경계와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바꾸는 포교소명칭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소화 12년 12월 16일)>.

11) 신신근 목사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자 이인범 목사는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목사 신신근에게 맡기고, 본인은 서울 제1교회, 곧 경성기독교회의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옮겨 줄곧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신신근 목사는 1936년 중반 경에 송현기독교회에 부임하여 1946년 12월 2일 소천 때까지 담임목사로 섬겼다. 신신근 목사 사후 즉시로 송현기독교회는 현 인천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동양선교회는 1933년 1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광주성결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881호 8면(소화 8년 4월 19일)>, 2월 10일에는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광주성결교회 구포교담임자 김정호(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를 신포교담임자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6호 5면(소화 8년 3월 18일)>.

동양선교회는 1936년 6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 51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859호 6면(소화 11년 7월 24일)>, 수개월 후 이인범은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면(소화 11년 10월 16일)>.

12) 장신주 목사

장신주는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의 제2대 담임목사였다. 오봉기독교회는 방현기독교교회(이원군 목사)의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도교 그리스도인(1933년 10월호)>, 1933년 부지매입, 1934년 건축<도교 그리스도인(1934년 6월호)>, 1935년 4월 추가 부지확보가 이뤄진 교회였다<도교 그리스도인(1935년 6월호 및 11월호)>. 그러나 이인범은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의 포교계와 오봉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1937년 5월 10일에 가서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소화 12년 6월 2일)>.

13) 최성진 장로

최성진(崔成珍) 장로는 평북 정주군 문인동기독교교회를 담임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출생년도가 1875년, 주소가 방현기독교회가 소재했던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현 구성군 남창리)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에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나 전달되

지 못하여 ‘독립유공포상자 중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문인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14) 김성산 목사

이원균 목사가 자녀교육 때문에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1월호)>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방현(호젠)기독교회의 제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6월호)>. 이인범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1937년 5월 10일에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소화 12년 6월 2일)>. 방현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 수는 없지만, 방현기독교회에는 유치원과 사택까지 갖춘 교회였으므로 김성산 목사의 주소지,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에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주정국 목사

주정국 목사는 이인범의 신학동기로서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을 당시 49살이었다. 부인과 외아들을 두었고, 20년의 목회경험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5월호에 따르면, 주정국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1937년 어느 시점에 평북 신의주기독교교회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되나 김성산 목사가 방현기독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12월호)> 1938년에 주정국 목사가 방현기독교회의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8년 4월호)>.

16) 이용섭 목사

평북 구성군 평지동기독교회의 담임이었다.

17) 류(W. K. Ryu) 목사

평북 정주군 고현면(혹은 고안면) 용포동에 세워진 용포동기독교회를 섬겼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18) 김명철

평북 신의주기독교회를 잠시 이끌었다<도쿄 그리스도인(1938년 11월호)>

19) 이난기 목사

이난기 목사는 협성신학교(감리교)를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11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고,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해방 후인 1948년경에 이난기 목사(용산기독교회)는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20) 윤낙영 목사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해방 후인 1948년경에 윤낙영 목사(아현동기독교회)는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21) 김태희 목사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소화 12년 4월 10일)>. 그리고 1939년 1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제10조에 의거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소화 14년 3월 16일)>

22) 송기준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소화 15년 8월 27일)>. 1940년 3월 15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소화 15년 7월 26

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에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58호 15면(소화 15년 7월 31일)>.

5.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서울성서훈련원 출신)

1) 홍종숙 목사

홍종숙 목사는 1939년에 서울성서훈련원에 교수 겸 직원으로 영입되었다. 그는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공부한 남감리교회 출신의 목사 김요한의 친구였다. 홍종숙은 김요한을 찾아가 신앙상담한 후에 남감리교회의 교인이 된 자로서 1911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네 곳에서 25년간 목회한 경력자였다. 홍종숙 목사는 서울성서훈련원에 영입되기 이전에 이미 1936년 말에 채이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김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상태였다.

2) 김상익 전도사

김상익 전도사는 1938년에 토마스 G. 히치 선교사 가족과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의 신학생이었으며, 1940년에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1938년 8월 25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3) 임공철 전도사

임공철은 서울성서훈련원에 재학 중이던 1939년 8월에 자신의 집에서 서울 제1교회의 제8주일학교를 개척하였고, 1940년에 이인범, 이난기, 윤낙영, 김상익에 이어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서울 제5교회로 발전시켰다<그리스도인 표준(1939년 11월 25일호)>. 이인범 목사가 1940년 8월 19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홍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홍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조선총독부관보 제 4087호 3면(소화 15년 9월 3일)>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임공철이 개척한 교회는 서울 대홍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정삼선 전도사

정삼선 전도사는 서울 제1교회의 집사 출신으로서 전기사업차 인천에 내려가 있는 동안 송현기독교회를 창립하여 1934년에 교회의 힘만으로 전기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정삼선은 금곡정에도 기독교회를 개척하여 1936년 5월에 부임하였다.

정삼선은 1938년에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46마일(약 74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석하여 1940년에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정삼선(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틀 뒤인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5) 임준식 전도사

임준식은 서울성경훈련원 학생이었다. 이인범은 1940년 3월 1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 3967호 6면(소화 15년 4월 1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

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대화기독교회에 임준식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소화 15년 3월 30일)>. 임준식 전도사는 인천 제4교회의 개척자였다.

6) 임화순 여전도사

임화순은 서울 제1교회(아현정) 여전도사였다.

7) 이권신 여전도사

이권신은 서울 제4교회(영등포) 여전도사였다.

8) 평화일 여전도사

평화일은 서울성서훈련원 재학 중에 서울 제5교회(대흥정)에서 여전도사로 섬겼다.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2)<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3)<교파명변경계(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사회교육,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31)

***아래의 사진들은 원본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써 총 48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상기명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布教管理署及布教管理事務所
位置變更屆

今般都合ニ依リ當派布教管理者成樂組
辭任ニ付後任者及布教管理事務所、位置
左記ノ通變更致候間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仁川府松峴里八十五ノ十七号

李寅範 (印)

朝鮮總督 殿

昭和十一年二月十七日
京誠通



1316

記

一、宗教及其、教派、名稱

基督教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二、舊布教管理者、氏名

成 樂 紹

三、新布教管理者、氏名

李 寅 八 乾

四、舊布教管理事務所、位置

京城市需昌洞一、六番地

五、新布教管理事務所、位置

仁川府松峴里五、番地

以 上

宣統(年)國務

1317



學校長

社會課長

事務官

注

官報掲載集

記載不校合

● 布教管理事務所之在比變更屆

布教規則第六條之依り

布教管理事務所之在比變更屆、提出シタル者左、如シ

層	出	舊管理事務所之在比	新管理事務所之在比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故宗永名稱	本畿道京城府南區一六	本畿道行州府松尾五
	東京四谷區教會米普齋會		

493

1318



11.2.10

11.2.13

1319

布教管理者及布教管理事務所
位置變更屆

今般都合ニ依リ當派布教管理者成樂錫祥士ニ
付後任者及布教管理事務所、位置左記ノ如ク
變更改修間此段及御届候也

昭和二年一月十日

仁川府松峴里今五十七番地

李寅範

朝鮮總督 敎

新羅總督府
11.2.27

記

一 宗徒及共、教派、名稱

基督教 東萊山谷堂教會基督教會

二 舊布教管理者、姓名

成樂錫

三 新布教管理者、姓名

李寅範

四 舊布教管理事務所、位置

京城府馬島邑洞一。六番地

五 新布教管理事務所、位置

仁川府松峴里五。番地

履歷書

原籍 黃海道北山郡雲中面柳村里

現住所 仁川府松峴里八十五番地ノ十七号

李 漢 範

明治十九年九月辛酉生

大正八年三月東洋宣教會ノ神學院ヲ卒業ス

同 四月ヨリ同十三年十二月まで聖潔教會傳道師視務ス

同 十五年九月ヨリ昭和八年九月まで東京市深川區朝鮮基督

教會牧師ノ視務ス

昭和八年九月 朝鮮仁川府松峴里基督教牧師ニ赴任ス

當頃回刺共ニ無シ

右之通相違無之候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李 漢 範

46

1320

寫

辭令書

京畿道仁川府松峴里八十五番地

李 寅 範

明治三十九年九月二十五日生

右者本宣教會朝鮮地方ニ於ケル布教監督
理者トシテ前任者成樂紹ノ代リニ任命ス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東京市四谷宣教會代表者

ダグリス、デー、カンニングハム 署名

朝鮮總督

殿

496

1321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891

W. D. CUMMINGHAM, DIRECTOR

TOKYO, JAPAN, Jan 10 1936

Chosen Sotokufu, Seoul,

Dear Sir, I hereby appoint
Lee Su Pom of 90 Sogunri, Pindou as
leader of our work in Korea instead of
Mr. Aubrey Rook Esq.

Respectfully yours,

W. D. Cummingham,

1322

47

布教管理者辭職屆

私儀

今般都合_ニ依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朝鮮布教
管理者ヲ辭職致候_ニ付此段及御屆候也

西曆一九〇九年一月一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朝鮮布教管理者

成樂

紹

朝鮮總督

殿

1323

468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March 10, 1936 193

Chosen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Immediately upon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February 27, I wrote Mr. I. P. Lee in Jinsen to report to you through Jinsen Shicho, as requested. I trust he has done this. Was his report satisfactory?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 IS

W.D. Cunningham

57

1328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Feb. 11, 1936 193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I have no reply to my letter to
you dated January 21.

Were the papers presented to you
by Mr. I. P. Lee of Jinsen satisfactory?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 ES

W.D. Cunningham

by 1332

A14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Jan. 21, 1936 183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Today I received your favor granting permission to transfer leadership of our work in Korea from Mr. Sung Rok-So to Lee In Pom.

I am forwarding the form you sent to Mr. Lee for him to fill out and present to you. I thank you.

Respectfully yours,

W. D. Cunningham

WDC:DAK

1345



布教管理者辭職届

私儀

今般都合ニ依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朝鮮布教
管理者ヲ辭職致候ニ付此段及御届候也

朝鮮總督 丁酉年 月 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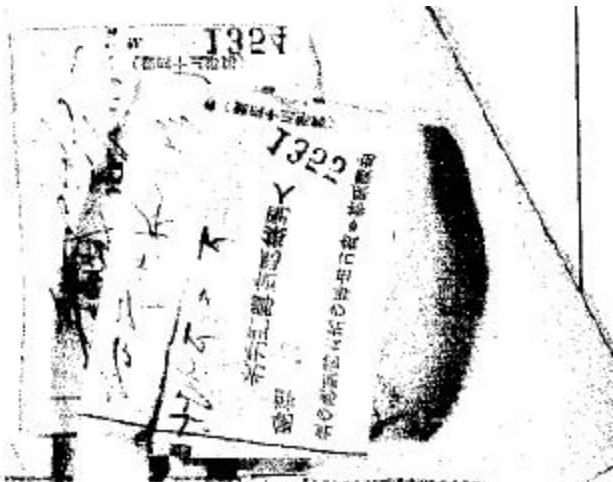
朝鮮布教管理者 成樂 紹

朝鮮總督

殿

1353

h



朝鮮總督府
 郵政省
 郵別郵便
 市内崇四洞四
 成樂紹殿
 1956

布教管理者ニ関スル件
 首題ノ件ニ関シ面談致シ
 夕キ儀有之候ニ付末ル十二月
 二十六日正午迄^{御座候事}當所^{社會課}
 宗教係へ出頭相成度候也

1357

宛名 清内生四洞四
 成樂組宛
 署名 永野
 管理員一開ニ付
 十一月廿五日
 主
 社會課長
 事務局長 幸
 1358

13

要旨
 布教管理者ノ件
 二関シ面談ノ要アリ
 乙付十二月二十六日正午
 送出頭ノマ
 布教管理者ノ件
 1359

府内玉川洞一
 成樂組
 布教管理者ノ件
 11.17
 1360

市川島信田一三人ノ代
 洪錫護先生
 1362
 聖火社
 京成廣雲洞一七
 株番京成三三七番
 宋台用

孝順新年
 市川島信田一三人ノ代
 成樂組
 136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Dec. 11, 1935 193

Chosen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Yesterday I received yours of Dec. asking for copy of my letter dismissing Mr. Sung Rok So. Am sorry I have no copy of that letter.

I dismissed Mr. Sung May 20, 1935 and asked your office to permit Mr. Lee In Pom to be appointed instead of Mr. Sung.

Today I saw Admiral Viscount Saito who gave me the original permit to work in Korea. Mr. Saito told me if I would explain to you that I have no copy of the letter dismissing Mr. Sung he believed it would be "all right."

What further can I do in the matter?

Respectfully yours,

WDC:SY

W.D. Cunningham

1368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Dec. 11, 1935 193

Chosen Sotokufu,
Keijo, Chosen.

COPY

Dear Sir:

Yesterday I received yours of Dec. 5 asking for copy of my letter dismissing Mr. Sung Rok So. Am sorry I have no copy of that letter.

I dismissed Mr. Sung May 20, 1935, and asked your office to permit Mr. Lee In Pom to be appointed instead of Mr. Sung.

Today I saw Admiral Viscount Saito who gave me the original permit to work in Korea. Mr. Saito told me if I would explain to you that I have no copy of the letter dismissing Mr. Sung he believed it would be "all right."

What further can I do in the matter?

Respectfully yours,

WDC:SV

b7c

137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O.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Dec. 24, 1935 193

Chief of Education Bureau,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Keijo, Chosen.

Dear Sir:

I have your favor of Dec. 21 which indicates that mine of Dec. 11 failed to reach you. I enclose copy of that letter. It explains that I dismissed Mr. Sung Rok So May 20, 1933 and wrote you to that effect and asked that you approve the appointment of Mr. Lee In Pom instead of Mr. Sung. I have no copy of the letter dismissing Mr. Sung and of course cannot send you a copy.

Mr. Sung is angry over his dismissal and will not resign unless forced to do so.

I am anxious to have this matter settled soon as possible, for my plans for 1936 cannot be made until this is settled.

What more can I do?

Sincerely yours,

WOC:SY

W. O. Cunningham,

I am registering this so it will not go astray as did mine of Dec. 11.

42/

1374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Nov. 16, 1935 193

Admiral Viscount Saito,
Nakacho, Yotsuya,
Tokyo.

Dear Sir:

I am wondering if Mr. Watanabe is opposed to the appointment of Lee In Pom as our representative in Korea.

Mr. Shelley is not and can never become our representative in Korea. He is an enemy of the Yotsuya Mission, as is Sung Rok So whom we dismissed for unfaithfulness.

Mr. Shelley and his family sailed for America Oct. 28 and it is doubtful if they ever return to Korea.

I would be grateful to you for a suggestion as to the next step to take.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SY

W. D. Cunningham

140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October 11, 1935. 193

Viscount Admiral Saito,
Wakacho, Yotsuya,
Tokyo.

Dear Sir:

I thank you for the interview you kindly gave me yesterday.

In handing you Mr. Watanabe's letter I should have explained that Mr. Shelley never had and never can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Yotsuya Mission. He is an enemy of the Yotsuya Mission. Mr. Shelley has no organization whatever behind him. He came out purely independently - as I did. He was not "despatched from the church of Christ in America" - as Mr. Watanabe has been led to believe.

I alone am responsible for the support of the workers and the work of the twenty-five churches and sixty-four Sunday Schools of the Yotsuya Mission. Mr. Shelley has no churches, no Sunday Schools and, I believe, no workers. Mr. Watanabe suggests that Mr. Shelley and I talk the matter over and decide which one will become superintendent." He might as well have suggested that we talk the matter over and decide which one would live in my house. Mr. Watanabe requires that I secure the consent of Mr. Sei Roku So to the appointment of Mr. Lee In Pom as Yotsuya Mission representative in Chosen. I dismissed Mr. Sei Roku So as incompetent and he is now, like Mr. Shelley, an enemy of the Yotsuya Mission, and of course would refuse to consent to the appointment of Mr. Lee.

Since I alone appointed Mr. ^{Sei}~~Sei~~ do I not have the power to dismiss him? I tried to make this matter clear to Mr. Watanabe. Evidently I failed.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ill be greatly appreciated.

respectfully yours,

WDC:SV

W. D. Cunningham

1413

昭和十年九月二十八日

朝鮮總督府 學務局

ダブルユー、デイ、
カンニング、ハム、



布教管理者變更ニ關スル件

普教會朝鮮布教管理者京城府崇四洞四番地成樂館ヲ仁川府松岷里八
 五番地李宜範ニ變更相成タル趣ヲ以テ之ガ手續方ニ關シ難ニ御照會
 相成候處布教管理者ノ變更ニ伴ヒ自然布教管理事務所京城府需島洞
 一〇六番地ヲモ變更スルノ必要アルヤニ思料セラレ便宜兩者變更届
 ノ様式別紙ノ通送付致候條右ニ基キ適宜該當事取捨ノ上新舊布教
 管理者連署ヲ以テ届出シメラルル様御取計相成度此段及回答候也
 追テ米國基督教會 (Church of Christ) ヨリ朝鮮布教ノ
 爲派遣セラレタル趣ヲ以テ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一五番地ゼ、

朝鮮總督府

ミカエル、シエリ、ヨリ布教管理者ノ届出有之候處右派ハ皆派
 ト同一ノモノニアラズヤ果シテ然リトスレバ布教管理者二名ヲ撤
 クノ必要ナカルベク貴下ト何人ト御打合ノ上何レカ一人ヲ布教管
 理者トキテラレテハ如何此ノ點ニ關シ何分ノ御回答相成度申添候

1414

556

身分証明書

京城府桂洞一三二

成樂紹

右者在朝鮮當教會放役者ナルコトヲ

証ス

追テ朴興順ハ無關係者ナリ

一九三二年二月八日

東京四谷教會 (一九三二年設立)

管理長 タブリス、ヲ、カンニングハム

二月 羊 德 啓 子

1431

517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Sept. 19, 1935

His Excellency Toyohiko Watansho,
Chief of the Bureau of Education,
Government General, Keijo, Korea.

Dear Sir:

August 28 I wrote you enclosing a note from former Governor General Saito asking that the name of I. P. Lee be recorded instead of Sung Kok So as representative of the Yotsuya Mission in Chosen.

No reply has been received. Should I have given further details in the matter?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SY

W. D. Cunningham

143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August 28, 1935

His Excellency Toyohiko Watanabe,
Chief of the Bureau of Education,
Government General, Keijo, Chosen.

Dear Sir:

I am enclosing a note of introduction from
Viscount Admiral Saito.

Some years ago I appointed Mr. Sung Rok So
as Yotsuya Mission representative in Chosen. I
wish now to have Lee In Pom registered as my
representative instead of Mr. Sung. I trust you
will do this. *Mr. Lee lives at 96 Hogenri, Jinson.*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SY

W. D. Cunningham

1435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March 28, 1934

Governor General,
Keijo, Korea

Dear Sir:

A letter from Korea tells me you want to know if
Sung Kok So is our representative in Korea.
No, Sung Kok So was dismissed last year and Lee
In Pyun or Jinsen, Song Hyun Ki, was appointed in
his stead.

The name of our church is church of Christ.

Respectfully yours,

W. D. Cunningham



1440



3
7/15

57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March 27, 1926 193

Ghosen Sotokufu
Keijo, Korea

Dear Sir:

Has your office endorsed the appointment of
Mr. Lee In Pom of Jinsen as representative of the Yo-
tsuya Mission in Ghosen?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 D. Cunningham 1443

WDC:DAK

三三

單

朝鮮總督府
11.8.21
官報掲載

學務局長

社會課長

事務官

官報掲載案

記帳及依合濟

●

教派名變更届

教派名稱變更ノ旨

届出テ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	届出年月日	届出年月日
昭和十一年七月八日	昭和十一年七月八日	昭和十一年七月八日
東京回谷宣教會	基督教會	京畿道仁川府松岷里千聖地
舊教派名	新教派名	布教管理事務所所在地

月 年 日

344

0447

11/8/21
117
P54

June 25th, 1936
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

朝鮮總督 殿

To Whom to be Concern:

We have much pleasure in use the name
 本教派名ヲ基督教會ト呼ビテ之
 "Church of Christ" trusting that you can allowed to change
 敬喜教ト稱シ 何事ニモ、教派名更ニ各堂教會基督教會
 the name Tokyo Yotsuya Mission into "Church of Christ for
 傳ニ基督教會朝鮮堂教會ト更ニ改稱ニ付御禮、上御禮可
 Korea". We are trying to get away from all denomi-
 相成度候。 原名ノ只基督教會、テカニ敬何事稱字ヲ添付
 nal practices and therefore, we must not change the name
 致難ク奉見、通リ永久不變ニ共、見テ使用ニ得奉ニ之絶対成度
 of our Church of Christ, any more in the future.
 不致痛也

Concerning this matter will be appreciated.
 御事情ヲ深ク御謝致名称
 Yours truly,

WDC 33

W.D. Cunningham
 ダブリン、デー、カニニグハム

337

0450

June 25th, 1936
 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

ensure in use the name
 基督教會之名字
 You are allowed to change
 你被允许改变基督教會之名
 into "Church of Christ for
 成为"基督之教會"之名称
 away from all denominations
 离开所有各宗派
 must not change the name
 绝对不得改变名称
 in the future.
 在未来。

matter will be appreciated.
 深表感谢
 Yours truly,

Dunningham
 丁丁

本件系第四号宣召会其时各人
 七、五月廿日附于以下有各管理
 所教者之元元之二、现在左记三
 会所于有之有各者二、使徒一
 一、主教会阿现所五七
 二、主教会阿现所一六
 三、仁川仁松里八九

0449

357

0450

二八

要評
添附切手紙
用一二下

未完結
完結

郵政省 行政月日誌

昭和十一年七月十七日 日付
昭和十一年七月十七日 日付
第 一 號
第一 號
第二 號
第三 號
第四 號
第五 號
第六 號
第七 號
第八 號
第九 號
第十 號
第十一 號
第十二 號
第十三 號
第十四 號
第十五 號
第十六 號
第十七 號
第十八 號
第十九 號
第二十 號
第二十一 號
第二十二 號
第二十三 號
第二十四 號
第二十五 號
第二十六 號
第二十七 號
第二十八 號
第二十九 號
第三十 號

政務總監
主務 學務局長
主任 社會課長
通譯官
文書課長

米國オハイオ州シンシナチ市
基督教復興協會長
レオニエルマイアース

朝鮮總督府

件名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布教ニ関スル件

1444

576

107

6/85

五月二十五日附師照會ニ係ル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

教會ノ朝鮮ニ於ケル布教ニ関スル件左記ノ通回

答ス

記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ニ於テハ布教管理者

試樂經
李寅龍ヲ

自定ノ昭和七年六月十日布教ヲ為スベキ旨届出

現在布教所設置ノ届出ヲ為シタルモノ三箇所アリ
右前記試樂經ニ於テ昭和十一年一月十日附ノ以テ布教管理者ヲ辭シ同日
附ニテ現布教管理者李寅龍ヲ届出ガタルモノナリ

谷田

一、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阿峴教會

京城市阿峴町五七番地

二、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京城市教會

京城市積善町一九番地

三、基督教會 仁川教會

仁川府松峴里八九番地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p>TRUSTEES</p> <p>LEON L. MYERS PRESIDENT</p> <p>D. A. TRINKLE VICE PRESIDENT</p> <p>G. L. PARIS SECRETARY</p> <p>IRA D. MATTHEWS TREASURER</p> <p>RALPH L. RECORDS JAMES DEFOREST MURCH</p> <p>W. N. HARLER</p> <p>L. L. HINTON</p> <p>J. E. DE GAFFERRELLY</p> <p>R. E. ELMORE</p>	<p>701-2 PEOPLE'S BANK BUILDING</p> <p>FOURTH AND ELM STREETS</p> <p><small>CADLE ADDRESS "CHRISTIAN" CINCINNATI</small></p> <p>CINCINNATI</p> <p style="font-size: small;">"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UNTO EVERY CREATURE" MARK, 16:13</p>	<p>ADVISORY BOARD</p> <p>J. E. THRIFT CHAIRMAN</p> <p>BYRON CASSELL</p> <p>GIBNIE L. REEVES</p> <p>A. S. CROUCH</p> <p>D. N. SHIRLEY</p> <p>DR. J. H. WILLIS</p> <p>JAS. G. HURST</p> <p>EARL CHILDERS</p>
--	--	---

6/25/1968



OFFICIAL ORGAN OF THE RESTORATION HERALD

Governor General, Korea.
Seoul, Korea.
Most honored sir,-

If I have not addressed you of your proper

title or in the manner which is proper will you please forgive as I do not know the forms proper for your office and country.

This letter is written to get official information as to certain points regarding our missionary work in your country. Conflicting reports continue to reach our office.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regards matters of fact and which ought to be a matter of record in your files. I enclose a circular letter which includes the matters about which we receive conflicting statements.

Briefly and to the point what we want to know from your office is:

1. Is W.D. Cunningham going missionary work with the legal permi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s claimed in No. 1.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2. Does W.D. Cunningham have twelve ~~missions~~ churches in Korea, operating with the legal consent and knowled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set forth in No. 2.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This letter is not an effort to gather material to embarrass W.D. Cunningham. If your reply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these twelve churches are actually operating in Korea under the approval of your honored Government we shall be most happy to learn from your office confirmation of such facts. We are friends of W.D. Cunningham and desire to learn the truth from official sources to sustain us in our confidence in him in the face of conflicting statements about his work.



We enclose stamps for reply and hope for an early answer to our questions. We will gladly pay whatever incidental expenses may accrue in securing this information.

Yours in Christ,

Leon L. Myers
PRESIDENT

1453

韓國總督府
 社會課
 11.7.10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Aug. 15, 1935.

To You as a Lover of Truth and Honor:

Before me lies a pile of letters—circular and personal—all written by J. M. Shelley of Korea to faithful rope-holders of the Yotsuya Mission seeking to win their support by vitiating the Yotsuya Mission.

I want to make proper allowance for the utter lack of experience on the field, but must call attention to a number of glaring untruths and dishonorable attitudes unworthy of a Christian. In personal letters and in a circular letter dated May 23 and mailed to our rope-holders, Mr. S. asserts:

① The Yotsuya Mission has no government permission to work in Korea, is working secretly and in violation of law, and our churches are liable to be closed in disgrace at any time. There is absolutely no truth in this. We have, and always have had, government permission to work in Korea. I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in Seoul (a personal acquaintance and formerly a near neighbor in Tokyo) before beginning work in Korea, learned all the legal requirements and observed them every one. July 23, 1935 I visited the Governor General's office in Tokyo to learn if there were any changes in the law. There were none. "Working secretly"? When granting a thousand yen bonus to our Mission a few years ago to help pay for the first mission building ever erected in Japan proper for the benefit of Koreans, the government sent us a generously-worded letter commending our efforts for Koreans. "Secretly and against the law"?

② Only two ministers are employed to care for our twelve churches in Korea. We have nine salaried workers in Korea and many volunteer workers. All the churches are well cared for.

3. We have dismissed fifteen men. We would readily dismiss that number or more if necessary to maintain our N. T. standards, but not half that number have been dismissed.

4. Our workers in Korea want to work with him. (Mr. S. has met the workers in only two of our twelve stations). One man was so incensed by the dishonorable efforts made to win him away from the Yotsuya Mission that he wrote saying even if we insisted upon his working with Mr. S. he would refuse. (An Oriental teaching honor to an Occidental!).

5. We used pressure to keep him in Tokyo. That "pressure" consisted of a mere suggestion. It was apparent before he reached his field that Mr. S. knew a thousand times as much about mission work as would know five or ten years hence, and we believed it would be wise for him to get a little experience in older missionaries before plunging into a new field all alone. He had and has nothing to learn.

Notice the standard of honor—or lack of it—in the following:

1. I sent him a long list of our best rope-holders and wrote them personal letters asking them to assist Mr. S. They did so. He used that list in mailing out his circular letter of May 23 in which he viciously, but rather stupidly, misrepresents our mission. A California friend received a copy of that letter and promptly sent us 500 dollars.

2. He accepted the hospitality of our home for himself and family for a week while plotting and working against us.

3. He accepted 100 dollars from the Yotsuya Mission to help pay his passage to Korea—and used it against us.

4. As he sees it, the only reason why the Yotsuya Mission evangelists are not working with him is lack of enough funds on his part to buy them over. An honorable mind would see two other reasons—the evangelists themselves and the Yotsuya Mission.

5. Mr. S. openly and brazenly appeals to our rope-holders for funds with which to win our workers away from us, and declares his willingness to take over all our evangelists in Korea if his supporters so desire!

Remarkable mental gymnastics—notice the contradictions:

1. He tells of one of our churches of a hundred members of whom only forty have been baptized, and yet declares we do not practice open-membership! (Our attitude on open-membership is well known).

2. He promised cooperation and has practiced only opposition.

3. Our work in Korea is carelessly managed, and yet carefulness is proven by the weeding out of unworthy men.

The many critical comments on that circular letter which have been sent to us indicate that we have nothing to fear from its results.

We sign this letter with regret that it is necessary to waste time and postage in defending the Lord's work.

W. D. CUNNINGHAM, Director
Emily B. Cunningham
Edith Shimmel
Ethel Jones.

1454

583

回答英譯文

29th July, 1936.

Mr. Leon L. Myers,
President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ourth and Elm Street,
Cincinnati, Ohio, U.S.A.

Dear Sir:

In reply to your letter of the 25th May last in which you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mission work of the Tokyo Yotsuya Mission in Chosen we beg to give you the following indications.

The Tokyo Yotsuya Mission, appointing Seirakusho (Song Wak So)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work here, presented its application to commence work on the 11th June 1932.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eirakusho resigned his post as superintendent on the 10th January 1936, and on that day Eihinhan (Yi In Pom) was reported as successor to Seirakusho.

The churches above mentioned are;

1. 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2. 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3. 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
No. 89 Shokenri, Jinsen.

Yours faithfully,

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1456

585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TRUSTEES
LEON L. MYERS
 PRESIDENT
O. A. TRINKLE
 VICE PRESIDENT
L. L. PARIS
 SECRETARY
IRA D. MATTHEWS
 TREASURER
RALPH L. RECORDS
JAMES DEFOREST MURCH
W. M. MANLER
L. L. HINTON
J. E. DE GAFFNELLY
R. E. ELMORE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ABLE ADDRESS "CHRISTIAN" CINCINNATI
CINCINNATI

ADVISORY BOARD
J. E. THRIFT
 CHAIRMAN
STRON CASSELL
GIRNIE L. REEVER
A. B. GROUND
D. W. SHIRLEY
DR. J. H. WILLIS
JAS. W. HURST
KARL CHILDERS

"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UNTO EVERY CREATURE' " MARK. 16:15

10/6/36

OFFICIAL ORGAN
 THE RESTORATION HERALD

Governor General,
 Korea, Chosen,

My dear and honorable Sir,-

Please look over the enclosed writings and make such investigations as your honorable Government cares to make to acquaint me with the facts as they are found by your office. This I would appreciate very much especially if your honor could give me sufficient details as to be conclusive either one way or the other.

Yours in Christ,

PRESIDENT

Leon L. Myers



162

1460

Please return this

Route 3, Eugene, Ore.
Sept 24, 1936

Leon L. Myers
701-702 People's Bank Bldg
Cincinnati, O.

Dear Brother Myers:

Because of a letter on page twelve of the September Restoration Herald, I am moved to write you a few lines. I am writing in the kindest christian spirit and trust that you will receive this note as coming from one who desires to help and not to criticize.

At the bottom of this letter you add ~~this~~ this statement: "This letter is self explanatory and will we hope fully satisfy those who wanted exact information upon the subject." Brother Myers, I am wondering if this letter is really self explanatory, even to you?

Mr. Tominaga's letter states that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nd he gives the addresses of the three. One is in Jinsen, which is Japanese for Chemulpo, and the other two are in Keijo, which is Japanese for Seoul. Do you know that these are the three churches which are mentioned in the affidavit by H. Takeuchi, a copy of which I enclose? Do you know that one address is a cabbage patch, the second a graveyard, and that the third is a number in the heart of the business district of Jinsen, and that there are no churches at any of these addresses? (Please note altho Mr. Tominaga gives the Japanese transliteration, rather than the Korean, yet the numbers are identical.)

Do you remember that the Tokyo Christian for June 1935 gives the number of the Korean churches as twelve.

Did you note that Song Nak So continued to hold the Yotsuya permit until January 10, 1936, altho he had not been employed by that Mission for years?

Did you remember that prior to 1932, according to this letter, there was no permit for the Yotsuya Mission, altho they claim to have started their work in 1923?

Did you know that Yi In Pom is one and the same as I. P. Lee who has been the superintendant of the work of the Yotsuya Mission in Korea ever since Song Nak So was discharged, several years ago? And did you notice that altho the permit was officially transferred to him on Jan. 10th, 1936, yet up to the date of Mr. Tominaga's letter, July 29, 1936, none of the twelve churches mentioned in the June 1935 P. C. had been reported to the Korean Government?

Do you know that this means that the Yotsuya Mission is still working illegally in Korea altho they now have a permit under which this practice could be corrected?

1462

590

It was easy for me to have the above understanding of Mr. Tomimaga's letter because of outside information which I had received in Korea, perhaps you knew all these things also, but I fear that the casual reader of this letter would only gather the information that the Yotsuya has, and did have, a permit in Korea and that three churches were reported under that permit, and therefore any criticism were unjustified.

I fully realize the tremendous pressure which has been brought here in America against the spread of the truth concerning the Mission situation in Korea. Since the death of Mr. Cunningham I realize the impossibility of spreading this truth and have ceased to press this point. But I do plead with you, and all who are sincerely interested in this ripe field that no hindrance be placed in the way of the effort now being made by Brother Chase.

How terribly the Koreans need the help of a Christian leader who is a resident on the field! Knowing the facts as you do could you not do something to help his going at this critical time?

I am fully convinced that i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Yotsuya Mission would face the facts they would not only help Brother Chase in his present venture, but would also see that all the Korean work be given to his oversight.

God knows, but possibly you are the one who could get them to do just that.

I am praying that God will use you mightily in the spread of His Kingdom.

Sincerely yours,

J. Michael Shelley

J. Michael Shelley

1463

591

Please return this

H. TAKECHI

Barrister at Law (Seoul) Keijo, Oct. 5, 1935

This is to certify that I have checked the following statements concerning the Yotsuya Mission in Chosen, with the records in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in Seoul, and also with the administrative laws governing missions in Chosen, and have found them to be true and accurate in every detail.

1. It is illegal to engage in preaching, or to organize churches in Chosen without a permit from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2.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must reside in Chosen.
3. The one who establishes a new church must report the fact to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report must be indorsed by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4. The qualifications of the preacher and the name and place of the church must be reported, and when any change is made in pastors, or in the location of the church, the same must be reported to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within ten days.
5. In case of the failure of a mission to secure a permit, or to report the churches established under a permit, the police have power to close the church.
6. While Song Nock So holds the permit for the Yotsuya Mission the Government General will not issue another permit to that mission for the territory of Chosen.
7.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must sign all reports.
8. Song Nock So, residence, No. 4 Shoong So Dong, Seoul, has produced a report to the Government General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Yotsuya Mission, Church of Christ, Tokyo, Japan, dated June 17th, 1933. He holds the only permit issued to that mission for Chosen.
9. Under the Yotsuya Mission permit held by Song Nock So, only three churches were reported, as follows:
 (1) December 4th, 1932, at No. 57 Arhiun Ri, Yong Kang, Myon, Seoul.
 (2) December 7th, 1932, at No. 190 Chak Sun Dong, Seoul.
 (3) February 1st, 1933, at No. 89 Song Hium Ri, Chemulpo.
10. There are no churches located at the addresses given above, and no record of their having been transferred. I personally visited all three locations today and found no church at any of them.
11. In the Tokyo Christian for June, 1935, page one, column two, I hav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Yotsuya Mission has eighteen groups of Christians in Korea, including twelve churches."
12. If this statement is true, these twelve churches are working illegally, and none of them have been reported.

IN TESTIMONY WHEREOF, I hereby affix my hand and seal.

HIROKATA TAKECHI (seal)

Barrister at Law

From reports that are reaching us from the U.S. it has become quite apparent that W.B. Cunningham, having largely wrecked the work of John F. Chase, and the three single ladies, is now determined to wreck not only our reputation, but the work we are endeavoring to do here. We do not believe that the Homefolks would tolerate this, if they had the facts. We have decided to return home with these facts, as it seems the only way. We are asking you to stand by us until the evidence is in. From the time you receive this letter, please send all offerings and communications to us, in care of Clair Hutchison, Corona, California.

J. Michael Shelley

1464

昭和九年三月

治安情況

檢事正

次席檢事

總務課

京畿道警察部



史 子사편찬위원회

恩相係檢事

次席檢事

檢事正

昭和十三年九月

治安情況

京畿道警察部



국립중앙도서관

朝鮮總督府官報

第一號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

龍山

印刷局

○詔書

朕東洋ノ平和ヲ永遠ニ維持シ帝國ノ安全ヲ將來ニ保障スルノ必要ナルヲ念ヒ又常ニ韓國カ禍亂ノ淵源タルニ顧ミ曩ニ朕ノ政府ヲシテ韓國政府ト協定セシメ韓國ヲ帝國ノ保護ノ下ニ置キ以テ禍源ヲ杜絶シ平和ヲ確保セムコトヲ期セリ爾來時ヲ經ルコト四年有餘其ノ間朕ノ政府ハ銳意韓國施政ノ改善ニ努メ其ノ成績亦見ルヘキモノアリト雖韓國ノ現制ハ尙未ダ治安ノ保持ヲ完スルニ足ラス疑懼ノ念毎ニ國內ニ充溢シ民其ノ堵ニ安セス公共ノ安寧ヲ維持シ民衆ノ福利ヲ増進セムカ爲ニハ革新ヲ現制ニ加フルノ避ク可ヲサルコト瞭然タルニ至レリ

朕ハ韓國皇帝陛下ト與ニ此ノ事態ニ鑑ミ韓國ヲ舉テ日本帝國ニ併合シ以テ時勢ノ要求ニ應スルノ已ムヲ得サルモノアルヲ念ヒ茲ニ永久ニ韓國ヲ帝國ニ併合スルコトヲセリ韓國皇帝陛下及其ノ皇室各員ハ併合ノ後ト雖相當ノ優遇ヲ受クヘク民衆ハ直接朕カ綏撫ノ下ニ立テテ其ノ康福ヲ増進スヘク産業及貿易ハ治安ノ下ニ顯著ナル發達ヲ見ルニ至ルヘシ而シテ東洋ノ平和ハ之ニ依リテ愈々其ノ基礎ヲ鞏固ニスヘキハ朕ノ信シテ疑ハサル所ナリ

朕ハ特ニ朝鮮總督ヲ置キ之ヲ朕ノ命ヲ承ケテ陸海軍ヲ統率シ諸般ノ政務ヲ總轄セシム百官有司克ク朕ノ意ヲ體シ

テ事ニ從ヒ施設ノ緩急其ノ宜キヲ得以テ衆庶ヲシテ永ク治平ノ慶ニ賴ラシムルコトヲ期セヨ

御名 御璽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

- 大内閣總理大臣兼 侯爵桂 太郎
- 陸軍大臣 子爵寺內 正毅
- 外務大臣 伯爵小村 壽太郎
- 海軍大臣 男爵齋藤 實
- 內務大臣 法學博士 男爵平田 東助
- 逓信大臣 男爵後藤 新平
- 農商務大臣兼 小松原英太郎
- 司法大臣 子爵岡部 長職

朕天壤無窮ノ丕基ヲ弘クシ國家非常ノ禮數ヲ備ヘムト欲シ前韓國皇帝ヲ冊シテ王ト爲シ昌德宮李王ト稱シ嗣後此ノ隆錫ヲ世襲シテ以テ其ノ宗祀ヲ奉セシメ皇太子及將來ノ世嗣ヲ王世子トシ太皇帝ヲ太王ト爲シ德壽宮李太王ト稱シ各其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3年度 第416表

『1933年(度)末 教會堂 布教所 講義所 現況』

基督教	
天主教	327
朝鮮耶穌教長老會	2,583
基督教朝鮮監理會	814
聖公會	87
露國正教會	6
日本基督教會	12
日本메소제스트教會	16
日本組合基督教會	7
第七日安息日耶穌再臨教	129
東洋宣教會	149
救世軍	74
朝鮮基督教會	27
東洋宣教會호리네스教會	7
朝鮮會衆基督教會	26
基督同信會	2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3
總數	4,269

宗教互勢調査表 (外国人布教)

計	基督教										備考	
	天主教	朝鮮長老教會	朝鮮基督長老教會	東洋宣教會	救世軍	新教	朝鮮聖公會	韓國正公會	中華基督教會	各派聯合會		五旬節教會
四三,三六五	一五六九三	五四七三	一六,一六四	一,〇〇八	二四四	四二二	三,〇八二	一七七	一六			
四三,七二五	一五,八五五	六,〇二二	一五,一四四	一,〇五一	七〇五	五,六四	三,二三〇	一,三三三	二二			
四四,〇〇七	一七,〇七二	五,六六一	一五,四三四	一,三七六	六九四	四,五二	三,一六六	一,三〇〇	二二			
四五,五三四	一六,九二九	六,四三八	一五,八二六	一,四三五	七八〇	四八五	三,三五四	一九三	二二	七三		
四七,一九八	一八,〇三四	六,五九二	一五,七八五	一,六一七	六二五	五九六	三,六一六	二〇八	二三	一〇二		
四七,六八二	一九,一〇二	五,七六一	一五,六八八	一,二二三	八二七	五八六	三,〇四八	二二八	八三	一一一		
											三〇 昭和八年ヨリ布教	九五 昭和九年ヨリ布教

국사편찬위원회

宗教々勢調査表 (外國人布教)

年	教		督					基					教	
	合	計	五向部	五向部	各派	各派	各派	各派	各派	各派	各派	各派		各派
昭和五年	4007					22	130	315	452	694	1376	544	602	6072
昭和六年	4554			73		22	193	485	780	1455	582	643	6723	
昭和七年	4198			102		33	208	586	827	1312	578	625	6022	
昭和八年	4782	30	95	111		83	338	586	827	1312	578	625	6902	
昭和九年	4853	73	140	137		74	399	658	753	1404	553	649	7191	
昭和十年	5446	87	131	94		68	355	540	846	1802	679	772	7906	
昭和十一年	5384	130	115	308		86	378	538	931	1795	722	822	6656	
昭和十二年	5172	97	142	289		65	361	508	1294	2666	655	755	6295	

国事院 調査委員会

昭和七年



寺院

創立許可

布教管理案件

其他

0012

Ⅲ.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협의회, 총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J. 마이클 셸리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은 1935년 3월 20일경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24일 첫 주일 예배는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25일 셸리는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 <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를 제출하였다. 추정컨대 셸리가 취한 이 발 빠른 행동은 이인범도 커닝햄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인 5월 25일 셸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회람서신을 작성하여 커닝햄과 요츠야(사곡)선교회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과 셸리 사이에 분열이 촉발되었고,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동경 요츠야선교회에게 조선포교를 허가하였으니, 조선선교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커닝햄은 그제야 어찌된 영문인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서둘러 성낙소를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커닝햄은 강력한 후원자인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직접 만났으며, 사이토의 서신을 첨부한 편지를 포함해서 수차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편지를 보냈다. 결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와 이인범을 1936년 1월 10일 소환하여 성낙소에게 포교관리

자사직서를 쓰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 경계를 접수하였다. 만일 사이트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만 일 셸리 가족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만일 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사직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J. 마이클 셸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 이름을 “J. 미카엘(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생년월일을 “1890년 6월 7일생”이라고 적었다. 또 학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대학 신학과 졸업,” 경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얄힐(Yamhill) 시 기독교회 감독목사 임명”이라고 기재하였고, “금년 3월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이라고 적었다. 함께 제출된 안수증서를 보면, 셸리는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얄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당시 미국에서 12년 이상 목회한 경력을 가진 만 45세의 중년이었던 것을 말해준다.

셸리는 1935년 4월 25일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원서에서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로 적었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제1항 종교 및 기타 교파 명칭: キリスト教(크리스토포) 기독교회.
- 제2항 교규(教規): 특별한 규정없이 성서를 통해 각 교회가 자치체로 과반수 투표로 직원을 임명. 각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 2인 이상의 집사를 두어 일반재정을 정리. 2인 이상의 장로를 두어 교회의 영적 치리를 맡김. 목사 및 전도사를 두어 일반 신도에게 설교 및 성서적으로 권면. 의식에 있어서는 성찬을 매일요일마다 행하며, 세례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행함.
- 제3항 포교방법: 포교소에서의 포교, 순회포교, 가정전도, 통신포교, 노방전도.
- 제4항 포교관리자의 권한: 기독교회의 대표, 포교사무 총괄, 교직 신분 진퇴(進退) 및 상벌.

제5항 포교자 감독방법: 관리자가 각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감독 지도.

제6항 포교관리사무소위치: 경성부 남대문동 세브란스병원구내.

제7항 포교관리자씨명: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y).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본래부터 감독자가 없었으나 일제의 통제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낙소, 셸리, 이인범, 채이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또는 포교관리자변경계에 담긴 내용들은 상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2.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제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J. 마이클 셸리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1월호)> 만 1년만이였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계추조(경성부 송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셸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

채이스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 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보면, 셸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J. 마이클 셸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것은 셸리가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채이스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테네시 주 브리스틀 시”로, 생년월일을 “1905년 9월 17일생”으로, 학력을 “1926년 6월 12일 아메리카 합중국 오하

이오 주 신시내티 신학 졸업”으로, 경력을 “1927년 3월 4일부터 1934년 11월 2일까지 동경 선교사 종사” 및 “1934년 12월 1일부터 1936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 기독교회 목사로 종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7일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되었다고 적었다.

체이스는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지 6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3. 존 T. 체이스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1) 김요한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4월 제2호에 따르면, 김요한(金約翰/與範) 목사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돌아온 감리교 목사로서 존 T. 체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었다가 기독교회로 환원하였다.

체이스는 1937년 2월 신당정에 가정집을 임대하여 김요한 목사 가족을 이주시켰고, 김요한 목사는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체이스의 제1호 교회인 ‘기독교회 신당정교회’를 탄생시켰다. 체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1940년 6월초에 체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체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

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추측컨대 채이스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아쉽게도 관보에서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신고된 연월일이 누락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산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2) 최상현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10월 제5호에 따르면, 최상현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가다가 환원하였다. 최상현 목사는 연희전문학교(제1회 졸업),

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낸 감리교회 목사였다.

최상현이 체이스를 만난 시점은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때였다.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체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30일 포교계와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최상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만찬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었다.

3) 성낙소 목사

성낙소牧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존 T. 체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체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에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면(소화 14년 6월 23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성낙소 목사의 포교폐지거나 기독교회 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를 찾을 수 없다. 또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가 1944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제출했던 기독교회 포교폐지계와 포교소폐지계에도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씨를 개명한 흔적도 없다. 이것은 성낙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교폐지계와 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는 것을 반대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내수정교회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었다.

4) 김문화 목사

김문화 목사는 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도움으로 환원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포교규칙에 따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성낙소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초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

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김문화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돈암정 제2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5) 박관조 목사

박관조는 29살 때인 1937년 여름에 체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한국인 전령(1937년 12월 제6호), 동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체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관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관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그리고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6) 백낙중 목사

백낙중 목사 부부는 둘 다 교사였다. 최상현 목사로부터 칩례를 받았고,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관조와 함께 근 4년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를 출석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기독교회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조선총독부관보 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교회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백낙중 목사는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회 공덕교회를 운영하였다.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신고 일자

조선총독부관보와 국가기록원의 문서철 내용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파명과 신고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2.06.11-1936.07.08

성낙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1932년 6월 11일 신고하였고, 이인범에 의해서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되었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1936.07.08-1945.08.15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을 변경하였다. 동경 요츠야(사곡)선교회는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완전히 끊고 한국선교를 포기하였으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해방 전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범은 1943년 9월 17일 포교관리자직책을 평산 무응에게 넘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응의 활동은 1944년 9월 30일까지 이어졌다. 평산 무응의 9월 30일자 계출(신고) 내용은 67일이나 지난 12월 6,7,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각각 실렸다. 패망직전 조선총독부의 업무처리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독교회: 1935.04.25-현재

J. 마이클 셸리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을 '기독교회'로 신고하였고, 존 T. 채이스가 1935년 4월 25일 계승하였으며, 협의회와 총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기독교의 교회: 1937.05.12.-현재

1930년에 선교활동을 펼친 동석기 전도자(목사)는 1937년 5월 12일이 돼서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을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로 신고하였다. '기독교의 교회'는 교역자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특이 내용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일본 동경 요츠야선교회(설립자: 윌리엄 D. 커닝햄)가 시작하고 후원한 '기독교회'로서 해방 전까지만 존재하였다. 해방 후까지 살아남은 교회들의 일부는 타교단으로 재건되었고(예: 인천 송현성결교회), 커닝햄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곧 이인범과 이원균은 타교단으로 이적(移籍)하였다. 반면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내친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등은 채이스 선교사가 돌본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매우 아쉽게도 1925년 5월부터 한국선교를 시작한 요츠야선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

회들에게 남긴 유산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명칭은 해방 후 ‘기독교회’를 우리말로 풀어쓰면서 시작되었다.

2) 조선총독부에 신고(届出)한 것과는 상관없이 협의회와 총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고, 요츠야선교회의 윌리엄 D. 커닝햄이 주도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역자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30년이며, 동석기 전도자가 주도하였다.

3)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26일 제3대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김요한의 포교관리자폐지계 제출을 시작으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목회자들과 기독교회들은 나흘 후인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폐지계 및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폐지 후에도 성낙소의 내수정교회와 최상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다.

4)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폐쇄당할 때까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기독교회’란 명칭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한 뒤, 1941년 초부터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었다고 채이스에게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도 같은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만일 ‘기독교회’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였더라면, 앞부분에 ‘일본기독교’ 또는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붙어 ‘일본기독교기독교회’ 혹은 ‘기독교회교단’이란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3개 교단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했던 대표적인 교단들로서 교단명칭변경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식어가 변경 후에는 앞부분에 ‘일본기독교’와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새로 붙었음을 보여준다.

(1)구세군(救世軍)은 구세단(救世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파명칭변경계를 1940년 말 혹은 1941년 초에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4216호 4면(1941년 2월 13일)>.

(2) 기독교조선감리회(基督教朝鮮監理會)는 기독교조선감리교단(基督教朝鮮監理教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과명칭변경계를 1941년 6월 12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347호 2면(1941년 7월 21일)>.

(3) 조선야소교장로회(朝鮮耶穌教長老會)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日本基督教朝鮮長老教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파명칭변경계를 1943년 5월 15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918호 4면(1943년 6월 25일)>.

5)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평산 무웅’과 ‘송산 의웅’ 두 사람이다. 평산 무웅은 기독교회를 떠난 이인범의 후임자로 제2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가 되었고, 송산 의웅은 이인범의 후임자로 아현정교회에 부임하였다.

6) ‘기독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송암 승웅’과 ‘산천 룡’ 두 사람이다. 송암 승웅은 체이스 가족이 모금을 위해 귀국한 다음 존 J. 힐과 김요한이 1940년 여름에 방문하여 설립을 도운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에 부임하였고, 송암 승웅의 포교계는 1940년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4130호 4면(소화 15년 10월 28일)>. 해방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는, 김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7)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과 송암 승웅(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은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송암 승웅이 시무한 초도리교회는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相約?

官報掲載

◎ 府教管理有設置法ヲ提出シテ在リ知シ
昭和十年 秋宗派大補 府教管理事務所在地 府教管理有以乃
四月五日 基督教會 宗派南大門通至百五十五番地 七、三力工ル、工

第二系

(在府記事館ハ) 務司長

各道知事宛

首題、件左記、通函出テテ付了知用
成テシ

専 錄 査 所

810

0497

條任據 記

一、宗教改革、教派宗派、為輔

二、教規又、宗制

特別十七、規定、手、聖書、通、各教會、自治制、十、

過、半、取、控、索、二、依、行、職、業、之、任、命、又

各、教、會、之、自、分、之、罪、日、悔、改、之、洗、禮、之、受、之、者、之、限、

會、員、之、又

二、人、以、上、之、執、事、之、置、之、手、一、財、政、之、處、理、又

二、人、以、上、之、長、老、之、置、之、手、教、會、之、是、的、之、治、理、又

牧、師、之、傳、道、呼、召、之、手、一、職、位、之、選、拔、之、且、之、聖、書、

以、之、教、養、又

儀式 聖餐 每日、曜日、此、之、行、

洗禮 河、又、之、海、之、性、之、之、行、

三、布教、方法

布教所、於、之、布教、巡、同、布教、永、途、傳、道、

通信布教 改、傳、傳、道、

四、布教管理、者、之、權、限

一、基督、教、會、之、代、表、又 只、布、教、事、務、之、總、攬、又

二、教、職、之、身、分、進、退、及、懲、罰、之、處、分、又

五、布教者、監督、之、方法

管理、者、自、之、各、教、會、之、歷、史、之、或、之、通、信、報、之、以、之、監、督、

指導、又

六、布教管理、者、之、任、置

京、城、南、大、門、通、五、丁、目、百、五、番、地

七、布教管理、者、之、氏、名

世、之、之、之、之、

(後、聖、書、者、也)

以上

0438

中華民國十五年四月二十六日
 第一四七號
 第五六四號

043977

布教管理者設置

令般布教管理者之設置其關係三付布教規則外
 係也

昭和十年四月廿五日

Michael Shelly

Michael Shelly

朝鮮總督官印

一 宗教及其教派名稱

* 基督教 基督教會

二 教規
 特別之規定ナラズ全宗者、通リ各教會ハ自
 治制ナル、過キ教規ニ依リ職責ヲ任命ス
 各教會ハ自今ノ罪ヲ悔ルニ洗禮ヲ受ケル
 者ニ限リ會員トス
 三 以上ノ執事ヲ置ケルニ限リ財政ヲ處理ス
 四 以上ノ長老ヲ置ケルニ限リ教會ノ長クニ治理
 五 傳道者トシテ並ニ之ヲ報候徒ニ課教ス
 六 寫書ヲ以テ教券トス
 儀式、聖餐、各日曜日此ヲ行フ
 洗禮、河水、海、池、ニテ行フ

三 布教方法
 布教所ニ於テ布教、巡回布教、
 家庭傳道、通信布教、踏訪傳道、

四、布教管理者、權限

イ、基督敎會ヲ代表ス

ロ、布敎事務所ヲ總攬ス

ハ、敎職、身分進退及賞罰ヲ處断ス

五、布敎者監督方法

管理者自ラ各敎會ヲ巡訪シ或ハ

通信報告ヲ以テ監督指導ス

六、布敎管理事務所、位置

京城府南大門通セダラニス病院構内

七、布敎管理者氏名

ゼ、ミカエル・シエリー

Michael Shelly

0440

履歴書

原籍 カリフォルニア州オレンジ郡
現任 京都府 船場五丁目五番地
Michael Shulby
Takeshi Shulby
Genaro Shulby

西曆一九九〇年六月七日生

學業

アメリカ合衆國オレンジ州ユダネ大學生神學科卒業

經歷

アメリカ合衆國オレンジ州ヤムビル市基督教會ノ監

督牧師ニ任命セリ

今年三月朝鮮堂教師ニ任命派送セリ

以上

右之通り相違無之候也

昭和十年四月十五日

セ、ミカエル、シエリー

Michael Shulby

0441

証文書 (譯文)

オレゴン州ヤタール所在「キヤークオグクリスト」及
「ハックロフト」ミシジョンポイントキヤークレハム前記
「キヤークオグクリスト」の全員タルゼ、エム、シエ
リヲ傳道事業上有資格者トシテ選定
セリ 仍テ同人ヲ福音傳道師ニ任命ス
左証文ス

一九二三年八月二十三日

左証文司會者

(以下大見ノ氏名列記)

一月 平 田 洋 子

342

0442

CERTIFICATE OF ORDINATION (duplicate)
"Preach the Word."

TO ALL WHOM IT MAY CONCERN, GREETINGS:

This is to certify that Bro. J.M. Shelley
a member of the church of Christ, worshipping in Yamhill,
Oregon, was selected by said Church and the Hutchcroft
Mission Point Churches as a competent person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and accordingly on the 12th.
day of August, A.D. 1923, our Beloved Brother was ordained
a Minister of the Gospel.

OFFICIATING MINISTERS (J. Earl Ladd)
(Oscar A. Cooper)

Assisted by:

C.V. Kuykendall
E.F. Simmons
L.H. Kuykendall
Gertrude A. Daniels

349

0443

昭和十二年二月

布教管理者變更屆

今般郡各三休リ當派布教管理者左記通り
變更致候間新舊布教管理者及連署者
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二年二月

京畿道京政府南大門通平田一五番地

舊布教管理者 Michael Shelley

京畿道京政府南大門通平田一五番地

新布教管理者 J. P. Chan

朝鮮總督 南水部 殿

一 本教及共教派名稱

基督教 基督教會

二 舊布教管理者、女名

也、三カエル、シエリ

三 新布教管理者、女名

京畿道京政府南大門通平田一五番地

以上

J. P. Chan
155

J. P. Chan
155

1109

第1109号

IV.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교역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동석기 목사의 미감리교회파에서의 활동

동석기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함경남도 북청군 니곡면 초리 1709번지로, 출생을 1881년(명치 14년) 4월 6일로 기록하였다. 학력으로는 1906-09년(명치 39-42년)까지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시 중앙학교에서 수업, 1909-11년(명치 42-44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서북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수업, 1911-13년(명치 44년-대정 2년) 동 대학 신학과(Garrett Biblical Institute)에서 수업 후 1913년 6월 신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27-29년(소화 2-4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전문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에서 수업 후 1929년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또 동석기 목사는 대정 3년(1914년)부터 소화 2년(1927년)까지 기독교조선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임명받아 활동하였고, 소화 5년(1930년)부터 12년(1937년)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할 당시까지 기독교조선교회 선교사로 임명받아 활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기독교 기독교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원)>.

동석기(경기도 인천부 내리 29번지 거주)의 포교계(布教屆)는 1915년 12월 23일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제19조에 의거 기독교 미감리교회파로 제출되었고 <조선총독부관보 제1094호 7-8면(대정 5년 3월 30일)>, 1915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 부천군 문학면 동춘리 소재 동막 미감리교회예배당 포교담당자계가 제출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

1102호 2-3면(대정 5년 4월 10일)>.

동석기는 1917년 11월 15일 거주지 경기도 인천부 내리 29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정 2의 34번지로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05호 3면(대정 6년 12월 11일)>. 곧이어 동석기(경기도 경성부 서대문정 2의 34번지 거주)는 1917년 11월 26일 동석기(董錫璣)를 동석기(董錫琪)로 포교자씨명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03호 2면(대정 6년 12월 8일)>. 그리고 한 달 후인 1917년 12월 26일 경기도 경성부 마포동 소재 마포 미감리교회예배당(구 포교담임자 윤성렬)에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44호 7면(대정 7년 1월 31일)>.

동석기는 1919년 6월 20일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정 2의 34번지에서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 806번지로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078호 9-10면(대정 8년 7월 15일)>. 그리고 수개월 후인 1919년 11월 20일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에서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로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244호 11면(대정 9년 2월 6일)>. 그리고 곧이어 동석기는 1919년 12월 15일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소재 창전리 미감리교회예배당(구 포교담임자 이강우)에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251호 9면(대정 9년 2월 16일)>. 그리고 1920년 12월 22일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내촌리 소재 내촌리 미감리교회예배당의 구 포교담임자 동석기를 홍성주(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거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04호 5-7면(대정 10년 4월 19일)>.

그리고 동석기 목사(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260번지 거주)의 미감리교회 포교폐지계가 1930년 1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997호 8면(소화 5

년 5월 3일)>.

2. 동석기 목사의 ‘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문서 <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 설치 및 포교계의 건>에 따르면, 동석기 목사는 1937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번지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이 설치계는 승인되어 소화 12년 8월 30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동석기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면서 교파명을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로, 포교관리자명을 동석기로, 그 권한을 교단의 대표자로서 포교사무를 총괄하고 목회자들을 임면과 상벌하며 감독하는 자로 기재하였다. 동석기가 교파명을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로 정한 것은 ‘기독교회’란 이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1932년 6월 11일)<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1936년 7월 8일)<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및 J. 마이클 셸리와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와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존 T. 채이스는 J. 마이클 셸리가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에 제출한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를 그대로 이어받아 1937년 2월 25일 J. 마이클 셸리를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제출하였다. 존 T. 채이스의 제1호 교회인 김요한 목사의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가 1937년 6월 23일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

3178호 10면(소화 12년 8월 18일)>를, 7월 23일에 포교소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 3178호 11면(소화 12년 8월 18일)>를 제출한 반면, 동석기의 다옥정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는 1937년 7월 6일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를 제출하였다. 반면 강문석 전도사의 '동교 기독의 교회' 포교소설치계는 김요한 목사의 '기독교회 신당정교회' 포교소설치계보다 17일 빠른 1937년 7월 6일에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8호 7면(소화 12년 10월 18일)>.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위해서 동석기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일본영사관의 토쉬토 사토우(Toshito Satow) 일본영사가 1930년 10월 7일 발행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동석기 목사는 이력서에 소화 5년(1930년)에 '기독교 조선교회 선교사'(기독교의 교회 선교사)로 임명받았다고 적었다<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원)>.

3. 동석기 목사의 '基督の教會'에서의 활동

동석기 목사는 1937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번지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188호 5면(소화 12년 8월 30일)>, 동년 7월 6일 같은 주소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의 교회'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동석기는 1938년 4월 4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흥리 360의 6번지(基督の教會 西興基督の教會), 함경남도 북청군 니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基督の教會 咸田基督の教會),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지(基督の教會 氷崖빙애基督의教會),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165번지(基督의教會 萬景基督의教會)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427호 10면(소화 13년 6

월 21일)>. 곧이어 동석기는 1938년 5월 7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基督の教會 水東基督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 基督の教會 西興基督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흥리 360의 6번지), 基督の教會 咸田基督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니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 基督の教會 氷崖빙애基督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지), 基督の教會 萬景基督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165번지)에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427호 10-11면(소화 13년 6월 21일)>. 이에 더해서 동석기(함경남도 북청군 니곡면 초리 1709번지 거주)는 1938년 5월 7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基督の教會 竹坪基督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에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11호 9면(소화 13년 9월 28일)>. 그리고 동석기(廣川靑岩, 함경남도 북청군 니곡면 초리 1709번지 거주) 목사는 1940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리 607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205호 2면(소화 16년 1월 30일)>, 동년 동월 동일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基督の教會 水西里基督教の教會(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리 607번지)에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07호 4면(소화 16년 2월 1일)>.

4. 강문석 목사의 ‘基督の教會’에서의 활동

강문석(본명 聖道)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 교동 306번지로, 출생을 1904년(명치 37년) 11월 5일로 기록하였다. 학력으로는 1911년(명치 44년) 4월에 경상남도 밀양군 하서면 양효리 사립영생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대정 3년) 3월에 졸업, 1925년(대정 14년) 4월에 일본 신호 관서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여 1927년(소화 2년) 3월에 졸업, 1932년(소화 7년) 9월에 미국 테네시 주 내

슈빌 시 밴더빌트대학 종교과에 입학하여 1935년(소화 10년) 6월에 졸업하고 신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소화 2년(1927년, 일본 신호 관서학원 신학부 졸업)부터 소화 7년(1932년, 미국 테네시 주 밴더빌트대학 종교과 입학)까지 기독교감리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였다고 기록하였다<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원)>.

동석기 목사는 1937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번지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승인되자<조선총독부관보 제3188호 5면(소화 12년 8월 30일)>, 1937년 7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의 교회’ 포교계(布教屆)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강문석 목사(전도사로 기록)와 그의 포교소(경기도 경성부 동교정 59번지)의 포교계와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교 기독의 교회’ 포교소설치계도 함께 기재하였다<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원)>. 이에 근거하여 동석기 목사의 기독의 교회 포교계가 1937년 10월 9일 조선총독부관보<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에 강문석 목사의 ‘동교 기독의 교회’ 포교소설치계가 1937년 10월 18일 조선총독부관보에 각각 실렸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8호 7면(소화 12년 10월 18일)>. 이어서 1937년 9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주 기독의 교회’(경상북도 경주군 경주읍 노서리 77번지)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5. 이용주(李用周) 목사의 ‘基督の教會’에서의 활동

1937년 10월 2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대현 기독의 교회’(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이용주(경기도 경성부 홍파정 5의 15번지 거주)는 1938년

12월 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基督の教會 포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면(소화 14년 3월 16일)>. 또 동년 동월 동일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基督の教會 大峴(대현)基督の教會(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에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3면(소화 14년 3월 16일)>

6. 특이 내용

1)강문석 목사의 본명과 출생연도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무려 7년이나 차이가 있었다.

2)동석기 목사와 강문석 목사의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및 설립 교회들의 주소가 확인되었다.

3)조선총독부관보와 국가기록원의 문서철 내용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시작은 성낙소와 이인범으로 이어진 윌리엄 D. 커닝햄 요츠야(사곡)선교회의 ‘기독교회’가 1932년 6월 11일부터, 마이클 쉘리, 존 채이스, 힐 요한, 해롤드 테일러로 이어진 ‘기독교회’는 1935년 4월 25일부터, 동석기와 강문석으로 이어진 ‘기독교회’(基督の教會)는 1937년 5월 12일부터였다.

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기독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7년, 관리번호: CJA0004842)

***아래의 사진들은 원본에서 캡처한 것들로써 총 20장 가운데 10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상기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四 總務部

官報掲載

報總督府
12.8.30
官報掲載

甲種

昭和二十年八月廿五日

2826

昭和二十年八月廿五日
受領
記
昭和二十年八月廿五日

總督

政務總監

主務

學務局長

警務局長

主任

文書課

秘書官

東京府立第一女子師範
校長 佐藤 幸子
主任 佐藤 幸子

基督教「基督の教會」布教管理有設置社

布教局、併

不附物 (第三葉) 同様

京城府茶屋町四十八番地居住、董錫琪

二月 洋 恩 督 府

事務局社會教育課
第2826號

6998



第二案

(左記事項の印刷添付あり)

基督教「基督の教會」布教管理者設置届件

學務局長

各道知事宛

首題ノ件左記ノ通届出テアリタルニ付

了知相成リタシ

月 等 窓 啓 守

28

1000

(Duplicate)

CONSULATE OF JAPAN
510 Union League Bldg., 2nd A Hill Ste.,
Los Angeles, California.

Date- Oct. 7, 1930
No. 1137.

TO WHOM I MAY CONCERN:

NAME: S. K. DONG,
DATE OF BIRTH: April 6, 1881.
OCCUPATION: Missionary for the Church of Christ.
ADDRESS: Y. M. C. A., Los Angeles, California.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described
above is a subject of Japan, and that he is en-
gaged in missionary work for the Church of Christ.

Toshito Satow,
Consul of Japan.

(Signed) By M. Tabata,
(Sealed)
Chancellor.

232

" 1004

(Duplicate)

DAVERLY-BELMONT IP 1006

Nov. 24th 1965

S. E. Song, native Korean missionary, has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by permission of the elders of the Daverly-Belmont Church of Christ, Nashville, Tenn.; and as intimations and accusations have been made against him and his work, it was deemed necessary to clear up the situation. This has been done in a very satisfactory way, and to the full credit and exoneration of Brother Song.

After a full investigation of these matters, it was found that there is no truth in the reports and suggestions made as published in some of the papers circulated among the brotherhood.

(Signed)

F. E. Jones,
C. O. Lipscomb,
E. P. Thurman, Elders.

234 1006

履歷書

本籍 廣龍府北青郡元合白洞里二の九番地

住所 京城府茶屋町四八番地

姓 錫 名 琪

明治十四年四月六日生

學業

一 自明治三十一年
至 左四十二年 北米合衆國ネブラスカ州大々
市中央學校修業

一 自明治四十一年
至 左四十四年 北米合衆國エリノイ州西北
大學修業

一 自明治四十四年
至 大正二年 右大學神學科修業

一 大正二年六月 右大學より神學士學位を受了

一 自昭和二年
至 左四年 北米合衆國オハイオ州シムン市
市シムン市上事門學校修業

一 昭和四年 右校より文藝士學位を受了

事業

一 自大正三年
至 昭和三年 基督教朝鮮監理教會牧師
任命也

一 自昭和五年
至 左十二年 基督教朝鮮教會宣教師
任命也

1013

241

廣 劑

一 廣 劑 丸

昭和十二年五月 日

石 蓮 錫 球

1014

水

昭和十二年五月五日

布教者資格證明書
 所籍 慶尚道蔚山郡蔚山邑松洞奉子靈
 現住所 京城府東橋町五十九番地
 職 名 傳道師
 氏 名 毛文錫
 明治三十七年七月六日
 右之者本教派傳道師トシテ其ノ
 資格ナルコトヲ證明ス
 昭和十三年七月六日
 京城府東橋町五十九番地
 基督教基督の教會
 布教管理者董錫基
 朝鮮總督 弟次郎 啓

1016

244

（附記）

ハクノ

布教 函

今根京教、宣布ニ候事致候間別紙
紙賀松義明書經ニ履歴書相添、左
既事頂才具之此段及御届候

延和十二年七月六日

京極府東橋町五十九番地

延和十二年七月五日
學業

老文 錫
明治十一年七月五日

京極府茶屋町五十八番地

基督教基督の教會
布教管理者 董賜坦

朝鮮總督 南次郎 殿

- 一 京來、其、教派、名稱
基督教基督の教會
- 二 布教、方法
- 一 布教所、二 於、其、布教
- 三 巡回布教
- 四 通信布教
- 五 京廷傳通
- 六 馳傳傳通

長崎府立第一高等學校

1015

27.13

3331

1015

ack

履 研 証 書

本籍 長岡市道前山町新山屋敷河三六番地
 現住所 本城府東橋町五十九番地

至五 文 錫 (本名 禮道)

明治 癸卯 春 七 月 拾 五 日 生

一 學 業

明治 癸卯 年 十 月 長岡市道前山町新山屋敷河三六番地
 私立 永 生 學 校 二 入 學

大正 三年 三 月 全 學 校 十 年 學 業

大正 五年 四 月 神 戶 關 東 專 門 學 校 神 學 部 二 入 學

昭 和 二 年 三 月 全 院 十 年 學 業

昭 和 七 年 九 月 來 國 于 三 月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三 月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三 月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昭 和 十 年 六 月 全 校 全 科 十 年 學 業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二 教 會 二 於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卅 一 日
 自 昭 和 二 年 專 管 教 監 理 會 收 師 上 之

至 昭 和 七 年 于 勤 務

三 遺 留 十 之

右 一 通 卅 相 遺 遺 之 條 也

昭 和 十 二 年 七 月 六 日

右 至 五 文 錫

長岡市道前山町新山屋敷河三六番地

V.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조선총독부관보 (1910-1945년)에 실린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 자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국가기록원의 자료

(1)<교파명변경계(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사회교육,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31)

(2)<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7년, 관리번호: CJA0004842)

(3)<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4)<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5)<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6)<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7)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8)'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2.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 (1)'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 (2)'종교 교세 조사표'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 (3)'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272-276쪽)
- (4)'종교 교세 조사표'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 (5)'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102-103쪽).
- (6)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

3.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 자료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성낙소 목사)

- (1)1916년03월25일_1090호03면_성낙소_포교계출_구세군
- (2)1916년03월25일_1090호05면_성낙소_포교담임자계출
- (3)1916년07월26일_1194호06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세군
- (4)1918년05월13일_1728호11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세군
- (5)1918년06월17일_1758호07면_성낙소_포교자거주지이전
- (6)1918년07월03일_1772호04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세군
- (7)1919년05월16일_2028호10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

세군

- (8)1919년06월11일_2050호12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
- (9)1920년09월25일_2438호02면_성낙소_포교폐지_구세군
- (10)1932년08월26일_1692호06면_성낙소_포교관리자설치계
- (11)1933년02월15일_1829호06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소설치계
- (12)1933년02월15일_1829호06면_성낙소_포교소설치계
- (13)1933년02월15일_1829호07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계
- (14)1933년03월20일_1857호06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_포교담임자계
- (15)1933년03월20일_1857호06면_성낙소_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_포교담임자계_김문화
- (16)1933년04월20일_1882호09면_성낙소_포교소설치계_인천송현
- (17)1933년04월20일_1882호10면_성낙소_포교담임자계
- (18)1933년06월23일_1935호05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계_구세군
- (19)1934년07월19일_2257호03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담임자변경계
- (20)1934년07월19일_2257호06면_성낙소_포교소재지변경계
- (21)1935년11월11일_2649호05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계_구세군
- (22)1936년03월18일_2752호12면_성낙소_포교관리자변경계_이인범
- (23)1936년08월21일_2883호06면_성낙소_교파명변경계_이인범
- (24)1937년01월26일_3007호05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폐지계
- (25)1937년03월09일_3042호06면_성낙소_포교소설립자변경계
- (26)1937년07월08일_3143호09면_성낙소_포교소설립자변경

계

(27)1940년06월21일_4024호03면_성낙소_조선야소교회_포교계

(28)1940년06월21일_4038호04면_성낙소_조선야소교회_포교소설치계

(29)1940년07월08일_4038호05면_성낙소_조선기독교(야소)교회_교회포계담임자선정계

2) 기독교회(포교관리자 J. 마이클 셸리, 존 T. 채이스 선교사, 김요한 목사)

(1)1935년06월15일_2526호07면_셸리_포교관리자설치계

(2)1937년05월04일_3087호09면_채이스_포교관리자변경계_셸리

(3)1937년08월18일_3178호10면_채이스_포교계_김요한(약한)

(4)1937년08월18일_3178호11면_채이스_신당정_포교소설치계

(5)1937년10월09일_3221호04면_채이스_포교계

(6)1937년12월16일_3277호03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돈암_기독교교회(대현_경주)

(7)1938년01월24일_3304호04면_최상현_포교폐지계_기독교조선감리회

(8)1938년02월07일_3316호06면_채이스_포교계_최상현

(9)1939년06월23일_3726호09면_채이스_포교계_성낙소

(10)1939년06월23일_3726호09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내수정

(11)1939년06월23일_3726호10면_채이스_포교담임자선정계_성낙소

(12)1940년03월14일_3943호03면_채이스_포교계_김문화

(13)1940년03월18일_3946호02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돈

암제2교회(김문화)

(14)1940년03월30일_3956호06면_채이스_포교담임자선정계_김문화(돈암제2교회)

(15)1940년07월04일_4035호02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정릉리

(16)1940년07월04일_4035호03면_채이스_포교담임자선정계_박판조(정릉리)

(17)1940년07월06일_4037호12면_채이스_포교계_박판조

(18)1940년10월28일_4130호04면_채이스_포교계_송암승옹

(19)1940년12월05일_4162호05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왕십리

(20)1941년04월02일_4256호13면_채이스_포교관리자변경계_김요한

(21)1944년10월10일_5306호01면_채이스_포교소폐지계

(22)1944년12월06일_5352호05면_채이스_포교폐지계_김요한_김문화_산천릉_송암승옹

(23)1945년01월23일_5387호03면_채이스_포교관리자폐지계_김요한

3) 기독교회 조선선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

(1)1920년07월03일_2369호04면_이인범_포교계출

(2)1921년06월07일_2646호06면_이인범_포교자거주지이전

(3)1924년11월12일_3674호06면_이인범_포교자거주지이전

(4)1925년04월09일_3792호07면_이인범_포교담임자계

(5)1927년05월27일_0121호14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6)1927년05월27일_0121호15면_이인범_포교폐지계

(7)1928년01월12일_0308호09면_포교담임자변경계_동양선교회_이원균

(8)1928년07월05일_0455호04면_포교폐지계_동양선교회_이원균

- (9)1933년03월18일_1856호05면_신신근_포교담임자변경계_동양선교회
- (10)1933년04월19일_1881호08면_신신근_포교계_동양선교회
- (11)1936년03월18일_2752호11면_이인범_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
- (12)1936년03월18일_2752호12면_이인범_성낙소_포교관리자변경계
- (13)1936년07월24일_2859호06면_신신근_포교폐지계_동양선교회
- (14)1936년08월21일_2883호06면_이인범_교파명변경계
- (15)1936년10월16일_2929호03면_이인범_포교계_신신근(금곡)_김영배(유정)
- (16)1936년10월16일_2929호04면_이인범_김영배_포교소설치계_포교담임자선정계
- (17)1936년11월18일_2955호06면_신신근_포교담임자변경계_동양선교회
- (18)1937년01월26일_3007호04면_이인범_포교계
- (19)1937년01월26일_3007호05면_이인범_포교폐지계(성낙소_김문화)
- (20)1937년01월26일_3007호06면_이인범_포교소소재지변경계
- (21)1937년02월09일_3019호05면_이인범_이난기_포교계
- (22)1937년02월09일_3019호06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 (23)1937년03월09일_3042호06면_이인범_성낙소_포교소설립자변경계
- (24)1937년04월10일_3069호04면_이인범_김태희_포교계
- (25)1937년06월02일_3112호09면_이인범_김성산_장신주_포교계
- (26)1937년06월02일_3112호10면_이인범_오봉교회_포교소설치계

- (27)1937년06월18일_3126호09면_이인범_포교계(김상익_최성진)_포교소설치계(용포동_문인동)
- (28)1937년07월08일_3143호09면_이인범_포교소명칭변경계_포교소설립자변경계_포교소소재지변경계
- (29)1937년08월18일_3178호10면_이인범_정삼선_채이스_김요한_포교계
- (30)1937년08월18일_3178호11면_이인범_금곡정_채이스_신당정_포교소설치계
- (31)1937년12월16일_3277호05면_이인범_포교소소재지변경계_유정_포교소명칭변경계_화정
- (32)1938년12월08일_3567호04면_이인범_윤낙영_포교계
- (33)1938년12월08일_3567호05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
- (34)1938년12월08일_3567호06면_이인범_윤낙영_이난기_김상익_포교담임자선정계
- (35)1939년03월16일_3645호02면_이인범_포교계_김태희(대구 덕산정)_이용주(기독교의교회_(대현))
- (36)1939년03월16일_3645호03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포교담임자선정계_김태희_이용주(기독교의교회)
- (37)1940년03월30일_3956호05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대화
- (38)1940년03월30일_3956호06면_이인범_포교담임자선정계_임준식_대화
- (39)1940년04월13일_3967호06면_이인범_포교계_임준식
- (40)1940년07월26일_4054호03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마산
- (41)1940년07월31일_4058호15면_이인범_포교담임자선정계_송기준
- (42)1940년08월27일_4081호06면_이인범_포교계_송기준
- (43)1940년09월03일_4087호03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대흥정
- (44)1942년02월23일_4520호02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현

천

(45)1943년10월26일_5020호14면_이인범_포교관리자변경계
_평산무용

(46)1943년10월30일_5024호20면_이인범_포교폐지계_기독교
교회조선선교회

(47)1943년11월08일_5030호02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_송산의용

(48)1944년12월06일_5352호03면_이인범_포교계_유지육

(49)1944년12월07일_5353호02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_이난기_유지육

(50)1944년12월09일_5355호02면_이인범_포교담임자선정계
_유지육

4) 기독의 교회(포교관리자 동석기 목사)

(1)1916년03월30일_1094호07면_동석기_포교계출

(2)1916년03월30일_1094호08면_동석기_포교계출

(3)1916년04월10일_1102호03면_동석기_포교담임자계출

(4)1917년12월08일_1603호02면_동석기_포교자씨명변경

(5)1917년12월11일_1605호03면_동석기_포교자거주지이전

(6)1918년01월31일_1644호07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

(7)1919년07월15일_2078호10면_동석기_포교자거주지이전

(8)1920년02월06일_2244호11면_동석기_포교자거주지이전

(9)1920년02월16일_2251호09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

(10)1921년04월19일_2604호05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계
출

(11)1921년04월19일_2604호07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계
출

(12)1930년05월03일_0997호08면_동석기_포교폐지계_미감
리교회

(13)1937년08월30일_3188호05면_강문석_포교계

- (14)1937년08월30일_3188호05면_동석기_포교관리자설치계
- (15)1937년10월09일_3221호04면_동석기_포교계
- (16)1937년10월18일_3228호07면_강문석_기독교교회_동교_포교설치계
- (17)1937년12월16일_3277호03면_강문석(경주)_동석기(대현)_포교소설치계
- (18)1938년06월21일_3427호10면_동석기_포교소설치계
- (19)1938년06월21일_3427호11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 (20)1938년09월28일_3511호08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 (21)1938년09월28일_3511호09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 (22)1939년03월16일_3645호02면_동석기_포교계_이용주
- (23)1939년03월16일_3645호03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_이용주
- (24)1939년03월16일_3645호03면_동석기_포교소설치계_포교담임자선정계_김태희(기독교회)_이용주
- (25)1941년01월30일_4205호02면_동석기_포교소설치계_수서리
- (26)1941년02월01일_4207호04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VI.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해설 및 자료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일제가 조선의 종교단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하여 1915년 8월 16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에 공포한 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다. 이 포교규칙은 일부가 개정되어 1920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2294호에 조선총독부령 제59호(포교규칙중개정)로 공포되었다. 개정의 이유는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칙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들의 포교관리자들은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이 펼치는 포교, 포교소설치, 포교소담임자 선정, 포교소담임자변경, 포교소소재지주소,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자폐지 혹은 포교소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고(届出)했어야했다.

한국교회는 일제탄압의 한 상징인 이 포교규칙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있었던 많은 양의 역사자료들을 얻게 된다.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발견된다.

- (1) '조선포교규칙 해설.' <매일신보> 1915년 8월 19일.
- (2) 국가기록원. '포교규칙.' 생산기관: 미상, 생산년도: 1922년, 관리번호: CJA0004759.
- (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 154-155쪽, 1915년 8월 16일; 제2294호 59-60쪽, 1920년 4월 7일.
- (4)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세계> 창간호. 1916년 2월, pp. 175-178.
- (5)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6년.

(6) 성결교회역사연구회. <일제시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선교현황> 제네시스미디어, 2010년, pp. 15-19.

(7) 이용호. <한국성결교회의 역사> 제3권. 서울: 성결문화사, 2000년, pp. 51-54.

2. 포교규칙 전문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독교를 위(謂)함.

제2조: 종교선포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포교자가 될 자격을 증명할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단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 또는 조선 사찰에 속한 자에게는 제2호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의의 요령
3. 포교의 방법

전항 각호에 든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10일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관리자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규(教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의 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의 방법
6. 포교 관리사무소의 위치
7. 포교 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 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 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포교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씨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하여 포교관리자를 두게 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포교관리자를 둘 때는 10일내로 제3조 제 1항 각호의 사실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7조: 전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8조: 종교 선포에 종사하는 자, 씨명을 변경하며 거주지를 이전하며 또는 포교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의 류를 설립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
2. 명칭 및 소재지
3. 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씨명 및 도면
4.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5. 포교 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 및 그 지변(支辨) 방법
7. 관리 및 유지방법

전항 5호에 의하여 포교 담임자를 선정할 때는 설립자 또는 포교관리자는 그 씨명 및 거주지를 구비하고 이력서를 첨부

하여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0조: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에 쓰고자 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의 류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포교 관리자 및 조선 사찰의 본사주지는 각 그 소속 사원,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신도수 및 그 해에 신도의 증감수를 익년 1월 31일 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 교파, 종파 및 조선의 사찰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당, 설교소 또한 강의소에서는 각 그 포교 담임자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에 속한 자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며,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署)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위반한 자는 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 유사한 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공고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대정 4년(1915)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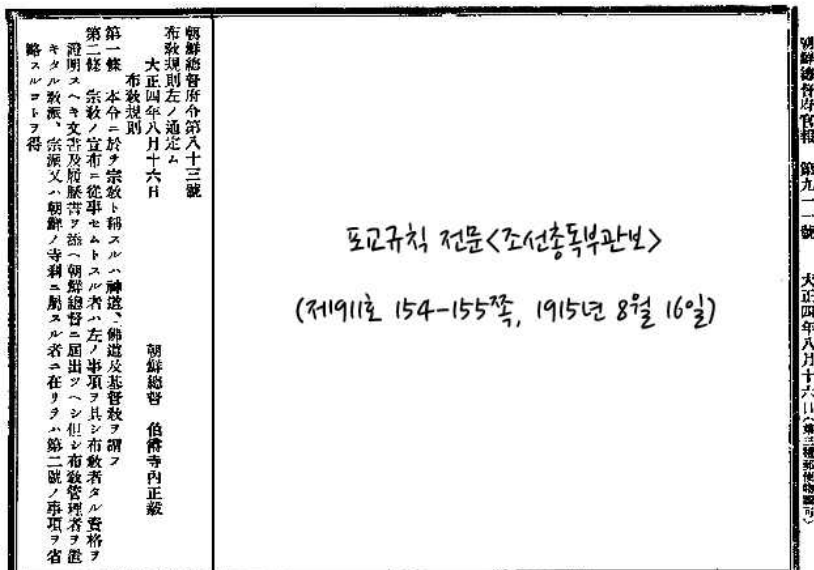
제17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8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에 신고를 하며,

또는 제3조의 인가 혹은 제9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사항 및 포교 담임자의 씨명 및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본령 시행에 제(際)하여 현재 종교선포에 종사하며 포교관리자를 두며 또는 종교의 용도에 쓰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류를 관리하는 자로서 전조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제2조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一 宗教及其ノ教派、宗派ノ名稱
 二 宗教ノ宗廟
 三 宗教ノ方法
 前項各款ニ屬スル事項ヲ變更シタルトキハ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二條 神道會教派又ハ内地ノ佛道各宗派ニ於テ布教ヲ爲サムトスルトキハ其ノ教派又ハ宗派ノ管長ハ布教管理者ヲ定メ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認可ヲ受ケヘシ
 一 宗教及其ノ教派、宗派ノ名稱
 二 教派又ハ宗廟
 三 宗教ノ方法
 四 布教管理者ノ權限
 五 布教者監督ノ方法
 六 布教管理事務所ノ位置
 七 布教管理者ノ氏名及其ノ隨從者
 前項各款ノ事項ヲ變更セムトスルトキハ其ノ變更ヲ命スルコトアルヘシ
 第四條 朝鮮總督ハ布教ノ方法、布教管理者ノ權限及布教者監督ノ方法又ハ布教管理者ヲ不適當ト認ムルトキハ其ノ變更ヲ命スルコトアルヘシ
 第五條 布教管理者ハ朝鮮ニ居住スル者タルコトヲ要ス
 布教管理ニハ毎年十二月三十一日ノ現在ニ依リ所屬布教者名簿ヲ作リ翌年一月三十一日迄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前項ノ名簿ニハ布教者ノ氏名及居住地ヲ記載スヘシ
 第六條 朝鮮總督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ニ對シ布教管理者ヲ置カシムルコトアルヘシ
 前項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カシムルコトアルヘシ
 第七條 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之ヲ變更シタルトキハ亦同シ
 第七條 前條ノ布教管理者ニ付テハ第四條及第五條ノ規定ヲ準用ス
 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ニ於テ其ノ規約等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トキハ第四條、第五條及前條第二項ノ規定ヲ準用ス
 第八條 宗教ノ宣布ニ從事スル者氏名ヲ變更シ居住地ヲ移轉シ又ハ布教ヲ廢止シタルトキハ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九條 宗教ノ用ニ供スル爲メ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ノ類ヲ設立セムトスル者ハ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ケヘシ
 一 設立ノ要スル事由
 二 名稱及所在地
 三 敷地ノ面積及建物ノ坪數、其ノ所有者ノ氏名及面積
 四 宗教及其ノ教派、宗派ノ名稱
 五 布教擔任者ノ資格及其ノ選定方法
 六 設立費及其ノ支辨方法

七 管理及維持ノ方法
 前項第五條ニ依リ布教擔任者ヲ選定シタルトキハ設立者又ハ布教管理者ハ其ノ氏名及居住地ヲ具シ朝鮮總督ニ添テ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之ヲ變更シタルトキハ亦同シ
 第十條 前條第一項第二號乃至第七號ノ事項ヲ變更セムトスルトキハ其ノ事由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ケヘシ
 第十一條 宗教ノ用ニ供スル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ノ類ヲ廢止シタルトキハ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十二條 布教管理者及朝鮮寺刹ノ本寺住持ハ各其ノ所屬寺院、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別ニ毎年十二月三十一日迄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前項ノ届出ハ布教管理者ヲ置カタル教派、宗派及朝鮮ノ寺刹ニ屬セサル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ニ在リテハ各其ノ布教擔任者ヨリ届出ツヘシ
 第十三條 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教派、宗派ニ屬スル者又ハ朝鮮ノ寺刹ニ屬スル者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又ハ届出ヲ爲サムトスルトキハ布教管理者又ハ本寺住持ノ副書ヲ添附スヘシ
 第十四條 第九條第一項又ハ第十條ニ違反シタ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
 第十五條 朝鮮總督ハ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宗教類似ノ團體ト認ムルモノニ本令ヲ準用スルコトアルヘシ
 附則
 第十六條 本令ハ大正四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第十七條 明治三十九年敕諭府令第四十五號ハ之ヲ廢止ス
 第十八條 明治三十九年敕諭府令第四十五號第一條、第二條及第三條ニ依リ認可ヲ受ケタル者ハ本令第二條ノ届出ヲ爲シ又ハ第三條ノ認可若ハ第九條ノ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ス但シ本令第二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ノ事項、本令第三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第四號ノ事項、本令第九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第五號ノ事項並布教擔任者ノ氏名及隨從者ヲ具シ本令施行ノ日ヨリ三月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十九條 本令施行ノ際現ニ宗教ノ宣布ニ從事シ、布教管理者ヲ設キ又ハ宗教ノ用ニ供スル教會堂、說教所、講義所ノ類ヲ管理スル者ニシテ前條ニ該當セサルモノハ本令施行ノ日ヨリ三月内ニ第二條第三條又ハ第九條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前項ニ依リ第九條ノ事項ヲ届出ツタル者ハ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ス

朝鮮總督府官報 第九一號 大正四年八月十六日(第三號)第三號

도교규칙 전문(조선총독부관보)(제91호 154-155쪽, 1915년 8월 16일)

布教規則

第一條 本令ニ於テ宗教ト稱スルニ神

道 佛道 及 基督敎ヲ謂フ

第二條 宗教ノ宣布ニ從事スルニ

者ハ左ノ事項ヲ具シ 布教者タル資格ヲ證

明スルニキ 文書 及 履歷書ヲ 添テ 朝鮮總督

ニ 屬出スルニ

一 宗教 及其 敎派 宗派 名稱

一 布教ノ方法

前項各條ノ事項ヲ 變更スルニハ 十日内

朝鮮總督ニ 屬出スルニ 氏名ヲ 變更スルニ 住所

ヲ 移轉スルニ 又ハ 布教ヲ 廢止スルニキ 亦同

第三條 神道 各敎派 又ハ 内地 佛道

各宗派 於テ 布教ヲ 爲スルニキ 其

敎派 又ハ 宗派 管長 布教 管理者ヲ

定メ 左ノ 事項ヲ 具シ 朝鮮總督ノ 認可ヲ

受ケルニ

一 宗教 及其 敎派 宗派 名稱

二 敎規 又ハ 宗制

三 布教ノ方法

四 布教 管理者 權限

五 布教 者 監督 方法

六 布教 管理 事務所 位置

七 布教 管理 者 氏名 及其 履歷書

1171

朝鮮各都，事項ヲ變更スルハ
朝鮮總督，認可ヲ受クヘシ
第四條 朝鮮總督ハ布教ノ方法布教
管理者ノ權限及布教者監督ノ方法又
ハ布教管理者ノ不適當ト認
其ノ變更ヲ命スルコトアルヘシ

第五條 布教管理者ハ朝鮮ニ居住
スル者タルコトヲ要ス

第六條 朝鮮總督ニ於テ必要アリト認
ムルキハ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對
シテ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コトアルヘシ
前項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ハ
十日内ニ第三條第一項各都，事項ヲ

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之ヲ變更スル
キ亦同シ

第七條 前條，布教管理者ニ付テハ
第四條及第五條，規定ヲ準用ス
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ニ於テ其ノ
規約等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
トシテ第四條，第五條及前條第二項
ノ規定ヲ準用ス

第八條 前條
第九條 宗敎ノ用ニ併ニ為教會堂、
説教所又ハ講義所，類ヲ認~~定~~スル
ハ直ニ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ニ届出
ツヘシ

0172
111

- 一 名稱及其在池
- 二 宗教及其、教派、宗派、名稱
- 三 布教擔任者、資格及其、選定方法
- 四 設立者及其、支辨方法
- 五 管理及維持方法

前項各節、事項ヲ變更シタルトキ其、事由ヲ具シ直ニ朝鮮總督ニ届出ツ

第十條 前條第一項第三節ニ依リ、
 教擔任者ヲ選定シタルトキ、
 布教管理者ヨリ其、氏名及位所ヲ具シ、
 十員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之ヲ變
 更シタルトキ亦同シ

第十一條 宗教ノ用ニ供スル教會堂、
 所又ハ講義所、類ヲ廢止シタルトキ、
 目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十二條 朝鮮總督ニ現ニ宗教ノ用
 供スル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
 類ニ於テ安寧被テ存テ其ノ廢止
 所為アリト記スルトキ、其、設立者又ハ
 管理者、對シテ之ヲ使用ヲ停止又ハ
 止スルコトヲ

第十三條 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教會
 派、宗派、屬スル者又ハ朝鮮寺刹、屬
 スル者本令ニ依リ届出ツ為サレタルトキ、
 布教管理者又ハ本寺住持、副住持

第十四條 朝鮮總督、布教管理者、
布教擔任者、朝鮮寺刹住持、對、
必平ト認ムル報告ノ提出ヲ命スルコトアリ

第十五條 朝鮮總督、必平ノ場合ニ
於テ、宗教類似團體ト認ムルモノニ本
令ヲ準用スルコトアルニ
前項ニ依リ本令ヲ準用スル團體、
之ヲ告示ス

第十六條 本令、大正四年十月一日ヨリ
之ヲ施行ス

第十七條 明治三十九年統監府令第四
十五號、之ヲ廢止ス

第十八條 明治三十九年統監府令第
四十五號第一條、第二條及第三條
ニ依リ認可ヲ受ケル者、本令第二
條ノ屆出ヲ爲シ又、第三條ノ認可若
シテ第九條ノ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
ス但シ本令第二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
テ、同條第一項第二號ノ事項、本
令第三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同條
第一項第二號、第四號ノ事項、本令
第九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同條第
一項第二號、第五號ノ事項、此布教

0174
分

權者、氏名及履歷ヲ具シ奉
行、日ヨリ三月内、朝鮮總督ニ届
出ツヘシ

第十九條 本令施行、際現ニ宗報、宣
布ニ従事シ、布教管理者ヲ置キ又ハ
宗教、用ニ供スル教會堂、説教所、講
義所、類ヲ管理スル者ニシテ前條ニ該
當ニシルモノ、本令施行、日ヨリ三月
内ニ第二條第三條又ハ第九條ノ事
項ヲ具シ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但シ前項ニ依リ第九條ノ事項ヲ届出
シ者、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者ト
看做ス

0175

1/4

朝鮮總督府 示 諭 旨
布教總期 永 布教局 布教員 布教官
理者設置屬 布教所設置屬 樣式定
通改正

第一號樣式

今般宗教，宣布從事政務間別
資格證明書 履歷書 相添 左記事項
具此段及御屋候也

年 月 日

住所

氏 名
年 月 日生

朝鮮總督府 氏名殿

一 宗教及其教宗派名稱
布教方法

（布教所、教名、布教地、宗派、家庭律道、通信、本名、記號、所屬、宗派、於、也）

備考

本局者其職名何之、同、所屬宗教宗派、則現
從事布教者、凡、格、上、常、有、布、教、一、
布教管理者、又、本、中、任、持、則、書、人、屬、出、人、決、其、
載、入、

0178

17

第一條式
履歷書
原籍
現任所

一學業
二教派又「官衙」於「仕免事項」
三賞罰
右之通相連無之候也
年 月 日

氏名 〇

0177

第二條式

今般布教「從事」度候間御認可相成
度布教規則第 條「依」此段申請候也
年 月 日

何任所
何教宗派管長

朝鮮總督爵氏名殿 氏名

一宗教及其「教派」宗派「名稱」
二教規（又「宗制」）
一別冊予以「提出」之候也

- 六 布教方法
- (第一節樣式同之)
- 四 布教管理者、權限
- 六 布教者監督、方法
- 七 布教管理事務所、設置
- 七 布教管理者ノ氏名
- (履歷書、第一節樣式ニ依リ別紙ニ記ス)

0176

備考

味津請書(地方廳)經由只直接本府提出

第三節樣式

布教管理者設置屆

今般布教管理者ヲ設置發候ニ付布教
 規則第七條第二項ニ依リ本記事項ヲ具
 此段及御届候也
 年 月 日

住所

朝鮮總督府 氏名殿

氏 名 (印)

(第二節樣式同之)

第四種樣式

布教所設置局

個般教會堂(說教所又稱義所)設五
候間在(說)事項(早)及(御)名候也

年 月 日

住所

(津波津波)但持其他布教上(身)名(師)
朝鮮總督府(氏)名(殿)

一 名稱

二 所在地

三 宗教及其教派、宗派、名稱

四 布教結任者、其資格及其選定方法

五 教士費及其支辨方法

六 管理維持方法

100-0178